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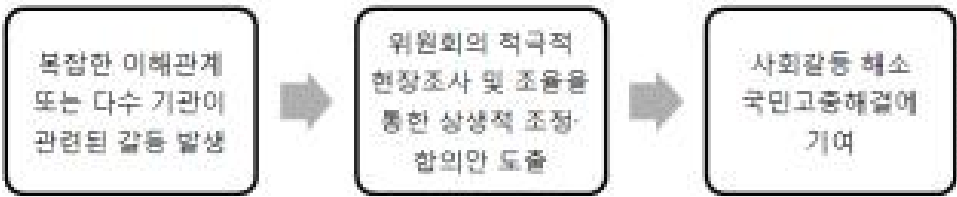
2015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고 충 처 리 국

□ **권익위 고충민원의 조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5조)

- 위원회의 현장 조정·합의 :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위원회의 현장 조정·합의 건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
 -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40건 이상의 고충민원을 현장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

<표> 연도별 고충민원 현장 조정·합의 현황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28	26	19	24	42	43	54	65

- 2015년에는 65건의 주요 고충민원을 현장 조정·합의로써 해결

<표> 2015년 분야별 현장 조정·합의 건수

민원 분야	교통 도로	도시 수자원	산업 농림	국방 보훈	경찰	주택 건축	행정 문화 교육	합계
건수	35	9	7	7	4	2	1	65

- 2015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에는 현장 조정·합의 대표사례 42건 수록

목 차

I. 행정문화교육민원	1
1. 학교시설용지 지정 해제 요구	1
II. 국방보훈민원	3
2. 국방부 국유지 내 임도개설 요구	3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조기 이전 요청	5
4. 사유지 내 미군철도 철거 요청	7
5.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군 동의 요구	10
6. 여수 향일암 인근 군사시설 이의	12
7. 사유지 무단사용 군사시설 이전 요구	14
8.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	18
III. 경찰민원	22
9. 경기 화성시 은장교차로 체계 개선 요구	22
10.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 해소 요구	25
11. 전남 함평 강운삼거리~대창삼거리 구간 교통안전 조치 요구	29
12. 도원교 입구 교통사고 방지대책 요구	32
IV. 산업농림환경민원	35
13. 가좌역 인근 아파트 철도·도로 소음저감 대책 마련 요구	35
14. 영동선 용인지역 아파트 교통소음 대책 요구	37
15. 광해방지시설 피해보상 요구	39
16. 국도 77호선 부체도로 접속구간 포장 요구	42
17. 조치원역 인근 철도소음피해 방지대책	44
V. 주택건축민원	46
18.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 조건 취소	46
19. 아파트 공사피해 대책 요구	49

VI. 도시수자원민원 53

- 20. 울산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구 53
- 21. 경전선복선화사업 철도횡단 수로암거 확장 요구 57
- 22. 택지개발로 단절된 진출입로 및 오수관로 연결 요구 60
- 23. 군자마을 문화재 복원 요구 64
- 24. 궁기마을 배수시설 설치 요구 70
- 25. 임천지구 산청측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요구 74
- 26. 동수원 IC암거를 이용한 보행로 개설 요구 78
- 27. ○○택지개발사업 도로선형 변경 요구 82

VII. 교통도로민원 84

- 28.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84
- 29. 청평도시계획도로와 국도46호선 연결 요구 90
- 30. 폐철도 교량 철거 95
- 31. 폐선부지 사용허가면적 조정 및 사용료 감면 98
- 32. 태안국도 3개 교차로 구조개선 요구 102
- 33. 국도23호선 ○○마을 교통사고 예방요구 106
- 34.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차로 신설 110
- 35. 비영리단체 노상주차장 주차료 할인 116
- 36. 국도23호선 덕제교차로 개선 요구 119
- 37.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정상화 125
- 38. 진해 ○○마을 이주대책 요구 129
- 39. 마을 앞 성토부 교량화 요구 133
- 40. 민자고속도로 소음·분진 예방 요구 139
- 41. 화성 국도 77호선 통로암거 설치 요구 144
- 42.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IC 조기 개통 148

1. 학교시설용지 지정 해제 요구

민원번호 : 2BA-1412-079676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조정개요>

사유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산28일원 토지[28개 필지, 41,386.6㎡(약 12,700평),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1993. 7. 26. 초·중학교시설 용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어떠한 학교시설 설립을 위한 계획이나 추진도 없이 23년 이상 방치되어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어, 매입하거나 학교시설용지 지정을 해제하도록 조정·중재

* 다수인 민원(26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황○○ 외 25명(접수일 : ‘14. 12. 5.)
- 피신청인 : 경상북도 포항시장, 경북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 민원주요내용

- 1993. 7. 26. 학교시설용지 지정 이후 20여 년 간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14년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학교시설용지 지정 해제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토지의 매입가능성 및 타당성
- 지역인구(학생) 추이 등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 타당성 및 기관 간 역할분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학교시설 용지 매입 또는 지정해제 요구
- (포항시장) 학교용지의 매입 또는 시설준치 여부는 포항교육지원청의 판단사항
- (경북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학교 신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토지 매입은 어렵고, 학교시설용지 해제를 위해서는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학교시설용지 지정 해제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회) : '15. 3. 5. / 5. 14., 현장조정 : '16. 7. 28.
- 포항교육지원청은 포항시에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 의견제출, 포항시는 도시관리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토록 하여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도시관리계획 및 그 간의 지역 인구(학생) 추이 분석 등 학교시설 용지지정 해제 타당성 분석,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학교시설용지 지정 해제 요구
-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십수년간 민원제기에도 기관 간 책임 전가로 20여 년 이상 재산권 침해 방치 • 학교시설용지 해제 타당성 불인정	•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장기민원해결 기반 마련 • 학교시설용지 해제 타당성 인정

2) 시사점

- 약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포항교육지원청 및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수년 간 지속된 장기 다수인민원 해결
-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용지)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해소방안 마련

2 국방부 국유지 내 임도개설 요구

민원번호 : 2AA-1410-179666 (국방보훈민원과)

<조정개요>

동두천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13. 3.부터 안흥동에서 상패동간 임도개설을 추진 중 국방부 국유지 사용동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 되었는바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유지 인계 및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30년 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정·중재

* 다수인 민원(26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주민대표 김용묵 외 25명
- 피신청인 : 동두천시장, 국방시설본부장, 산림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에서 상패동으로 가는 임도개설 공사부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부지 사용 동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동두천에서 추진 중인 주민숙원 사업(임도개설)의 시급성 및 적절성
- 국방부 관리 국유지의 임도 사용동의 가능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 요구
- (동두천시장) 임도는 산림경영을 주목적으로 조림,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과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 역할을 수행, 임도시설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산림'에 포함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국방시설본부장) 민원지역은 국방부의 미활용재산으로 산림청과 상호 사용승인 대상 토지이며, 임도는 영구시설물 축조에 해당되어 사용동의 불가. 단, 공익사업 추진 시 손실보상에 의한 매각 협의 가능

- (산림청장) 국유림 편입예정지의 임도노선 구간 중 시공과정에서 보완 조치 및 절·성토 사면 복구비 예치 등의 조건으로 사용허가 검토 가능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국유지 인계 및 국유지 사용허가 등 조정·중재안 도출
- 국방부에서 사용 중인 산림청 국유지를 인계받고, 이 민원 임도개설 예정토지인 국방부 국유지를 산림청에 인계 후 사용허가 추진 협의
-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주민숙원 해결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계기관 협의

5. 조정 결과

- (국방시설본부) 이 민원 국유지의 기획재정부 사용승인 시 산림청장에게 조속한 재산인계 및 행정절차 진행
- (동두천시)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이 민원 국유지 재산인계 시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해 산림청장에게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산림청장의 허가조건을 준수
- (산림청) 동두천시장의 이 민원 국유지 사용허가 신청 시 임도노선 구간 중 시공 과정에서 보완 조치 및 절·성토사면 복구비 예치 등의 조건으로 국유림 사용허가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안흥동과 상패동 주민들이 돌아가던 거리 약 6km • 동두천시는 '13년 시작한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 고충 발생	• 안흥동에서 상패동 임도개설 후 마을 연결길 약 2km로 단축 • 관계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조정안 마련 및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숙원 해결

2) 시사점

-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3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주민숙원 해결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조기 이전 요청

민원번호 : 2AA-1410-063386 (국방보훈민원과)

<조정개요>

신청인들은 ‘진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서, 현 처리시설의 노후로 악취가 심하여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 처리시설을 2013년말까지 폐쇄하겠다고 한 약속의 조기 이행요구

* 다수인 민원(954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진해 ○○아파트 대표회의 김○○ 외 953명, ○○환경 대표이사 장○○
- 피신청인 : 창원시장,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2) 민원주요내용

- 진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조기 이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국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의 적법성 여부
- 현 처리시설의 이전 대체 부지의 확보의 가능성 및 적절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현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및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조기이전 요구
- (창원시장) 현 처리시설 노후로 악취가 심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폐쇄해야하나 대체 처리시설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 곤란
- (국방시설본부장) 軍 수관로 보호부지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 불가, 창원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면 매각할 수 있음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혐오시설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대체시설 이전 등 조정·중재안 도출
- 대체 예정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군 수관로 보호부지 사용방안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신청인) 창원시장에게 이 민원 부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협의 매도
- (창원시장) 이 민원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 2년 이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고, 현 처리시설을 폐쇄
- (국방시설본부장) 창원시장이 대체 처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기타 법률에 제한사항이 없으면 창원시장에게 군 수관로 보호부지 중 일부를 대체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매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갈등 예상 •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초래	•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저감 •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주민 신뢰 회복

2) 시사점

- 약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 등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 해결
- 각 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기여

4. 사유지 내 미사용 미군철도 철거 요청

민원번호 : 2AA-1411-121871 (국방보훈민원과)

<조정개요>

부산 동구 범일동 신청인 회사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미군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미군 측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철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바 철도를 철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부산해수청의 기존 철도 시설을 대체철도노선으로 공여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 기업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부산 동구 범일로 13 경남산업(주) 대표이사 이영만
- 피신청인 : 국방시설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관계기관 :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2) 민원주요내용

- SOFA 협정을 통해 미군에 공여된 사유지 내 미사용 미군철도 철거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사유지 내 미사용 미군철도의 철거 가능여부
- 미군철도 철거 후 적절한 대체철도 제공 가능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사유지 내 무단으로 설치된 미사용 미군철도의 조속한 철거 요구
- (국방시설본부장) '15. 2. 10. 부산 美 제55보급소 DPW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美 육군 대구위수사령부, 美 제55보급소, 美 25수송단, 권익위, 한국철도공사, 신청인 등이 참석하여 한·미 합동행정위원회 회의 시 美측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韓측에 민원해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의결과 현 철도 보수 불필요성 및 대체노선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여 국방시설본부에서 SOFA 시설/구역 분과

- 위원회에 기존 철도노선 반환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에 대한 신규 과제 상정 건의 추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체 철도노선으로 검토 중인 6부두 전용선 타당성 조사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업무에 적극 협조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美측은 6부두지역 대체 철도노선 타당성 조사(3~6개월)를 실시하고, 국방시설본부에서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기존 철도노선 반환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에 대한 신규 과제 상정 건의 추진
-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업민원 해결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계기관 협의

5. 조정 결과

- (국방시설본부장) 현 철도시설을 보수하여도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3축 화차의 운행이 불가하므로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보수공사 중지, 대체 철도노선 선정 및 주한미군의 타당성 조사 지원,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현 철도시설 반환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에 대한 과제 상정 등 조속히 현 철도시설 반환 및 공여업무 추진, 대체 철도노선 공여 시 현 철도시설 철거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방시설본부장이 추진하는 대체 철도노선 선정, 선로사용, 타당성 조사 및 공여업무에 적극 협조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현 철도시설 철거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관련 열차탈선 취약요인 등 안전성, 노선 타당성, 철도건널목 사용, 대체 철도노선을 이용한 군수물자 상하차 방안 검토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업무협조
- (신청인) 현 철도노선 철거 전 위기사태 및 군사대비사태 시 군수 작전 지원을 위해 철거 전까지 현 철도노선 사용에 동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사유지 내 미사용 미군철도 보수를 위해 예산수립 및 공사예정 • 군사작전에 사용가능한 대체 철도노선 필요	• 보수 후에도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임을 확인하여 예산낭비 예방 •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철도를 대체시설로 이용

2) 시사점

-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SOFA 협정으로 공여된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민원 해결

5.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군 동의 요구

민원번호 : 2CA-1504-099299 (국방보훈민원과)

<민원개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 중인데 건축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할 부대장 협의결과 부동의 되었는바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지역 개발과 동시에 군의 작전 환경을 보장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민·군이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 기업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서울 중구 (주)오르스디엔씨 대표 윤현덕
- 피신청인 : 육군 제55보병사단장
- 관계기관 : 용인시장

2) 민원주요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관할 군부대의 동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 군사작전과 재산권 행사가 상호 충돌되지 않는 방안 검토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관할 군부대의 동의 요구
- (육군 제55보병사단장) 민원지역은 작전성 검토 후 심의결과 부동의된 지역으로 군용항공기 안전운항 등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건축 제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재심의 불가
- (용인시장) 도시기능 강화, 도시미관향상, 양호한 주거생활환경 유도를 위해 민원 지역에 주거용지 개발 및 적합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민원지역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군간 협의 실시
-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업민원 해결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계기관 협의

5. 조정 결과

- (신청인) 민원지역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피신청인과 사전상담 및 현지토의 등을 실시한 후 재협의 요청
- (육군 제55보병사단장) 신청인이 재협의를 요청할 경우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유무 등에 대해 확인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협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시 신청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의결과에 반영
- (용인시장)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재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지원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사유지라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 • 관할 군부대장은 군사작전에 영향이 있다며 부동의 결정	• 관할 군부대장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민·군이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 실시 •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군 동의 추진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2013년 군부대장의 부동의 이후 중단된 사업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민원 해결

6. 여수 향일암 인근 군사시설 이의

민원번호 : 2BA-1501-285373 (국방보훈민원과)

<조정개요>

여수 향일암 인근 거북머리 지역에 주민협의 없이 증·개축 중인 군 부대 생활관 이전 요구 민원에 대해 군 부대는 주민설명 및 의견 수렴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여수시는 현 임포소초 주둔지(국방부 국유지) 내 거북머리 둘레길, 안보관광지 조성 등에 대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합의

* 다수인 민원(32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76-8 김상도 외 31명
- 피신청인 : 육군 제31보병사단장,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 관계기관 : 여수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여수 향일암 인근 군사시설 증·개축 반대

2. 주요 쟁점사항

- 군사시설 이전 가능여부
- 군사시설 이전 불가 시 대안 마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여수 향일암 인근 군사시설 증·개축 반대
- (육군 제31보병사단장) 검토결과 적합한 대체지가 있을 경우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이전 가능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등과 협의 필요, 현 위치(거북머리 지역)에 병영생활관 개선공사 시 지역주민과 협의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대체시설사업, 기부채납,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임포소초 대체지 이전사업이 가능하나 사업방법 결정, 재원조달 등은 사단에서 검토 필요, 현 임포소초 주둔지(국방부 국유지) 내에서 생활관 위치를 변경할 경우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변경 추진

- (여수시장) 임포소초 대체지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의, 대체지 주민설득 및 시 예산 수립에 대한 검토 필요, 현 국방부 국유지 내 생활관 건축 시 거북머리 둘레길, 안보관광지 조성 등에 대해 적극 지원 가능

2) 민원특성 : 군사시설,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출석조사·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합의안 도출
-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다수인민원 해결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계기관 협의

5. 합의 결과

- (육군 제31보병사단장, 전라시설단장) 현 임포소초 주둔지(국방부 국유지) 내에 병영 생활관 건축 시 주민설명 및 의견 수렴하여 설계 추진
- (여수시장) 현 임포소초 주둔지(국방부 국유지) 내 거북머리 둘레길, 안보관광지 조성 등에 대해 지원검토

6. 합의효과 및 시사점

1) 합의 효과

합의 전	합의 후
• 지역주민들이 군사시설 증·개축에 반대하여 공사중단 • 군 부대는 공사강행 계획 및 주민들은 무력시위 계획	•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공사에 반영 •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사를 원만히 추진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원이 해결
-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다수인민원 해결

7. 사유지 무단사용 군사시설 이전 요구

민원번호 : 2CA-1503-254577 (국방보훈민원과)

<조정개요>

김해김씨 황성공파 강진종중 소유의 토지(전남 강진군 덕남리 산 77-4) 일원에 군부대에서 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으로 군사시설물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고 있는 바, 종중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이 민원 토지 내 군사시설의 보상과 이전을 요구

* 다수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해김씨 황성공파 강진종중 대표 김○○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육군 제○○보병사단장,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2) 민원주요내용

- 종중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종중 토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사유지내 무단사용 중인 군사시설의 위법 부당성
- 군사시설(사격장, 각개전투 훈련장) 부지의 이전 가능성 및 적절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종중 토지 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군사시설 사용료 보상 및 이전 요구
- (사용부대) 대체시설인 2020년 종합 훈련장 신축이전까지 현 시설물 사용 필요
- (재산관리 시설단) 신축이전까지 현 시설물 점유면적에 대해서만 사용료 지급

2) 민원특성 : 군사시설,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대체시설 이전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2회 : '15. 4. 28~29, 6. 5~6), 피신청기관 협의('15. 4. 23~5. 8)
- 군(軍)의 군사시설 사용여건을 보장
- 신청인은 종종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상급기관 법령해석

5. 조정 결과

- (육군 제○○보병사단장) 2019년까지 이 민원토지에 군사시설물 철수, 2020년도 이후 신청인의 경제활동 협조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이 민원토지를 감정평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협약서 체결하고 사용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불에 적극 협조
- (신청인) '19년까지는 이 민원토지에 경제활동 및 가설건물 신축 등으로 군사시설물 사용과 각종훈련에 제한이 없도록 적극 협조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다수인민원 및 갈등 예상 • 호남지역 예비군훈련 지장초래	• 갈등 민원해소 • 현장 감정평가 및 토지 사용료 지급 완료 • 정상 추진(대체시설인 종합훈련장 공사) 중 • 이 민원토지에서 군사시설물 이전 예정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군(軍)은 현대화된 대체시설을 준비하고, 신청인은 종종 토지를 이용한 종종 장학 기금 마련 기여

"김해김씨 황성공파 종중땅 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합의"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서 현장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전남 강진의 김해 김씨 황성공파 종중 사유지 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와 관련, 종중 후손들과 군부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강진군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해 김씨 황성공파는 지난 30년 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종중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부터 강진군 덕남리 일대 김해김씨 황성공파 종중 소유 부지에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종중 후손들이 최근 장학사업을 하겠다며 훈련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정안에서 제31보병사단이 오는 2019년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수해 2020년 설립 예정인 강진 예비군 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또 종중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는 이 토지에서 경제활동 등을 금지해 제31보병사단의 훈련에 협조하도록 했다.

종중은 군사시설물의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jesus7864@yna.co.kr

시사투데이

2015년 07월 14일 (화)
온라인

· 권익위, 군부대 시설물 이전 요구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민원

시사투데이 연합뉴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형성공파 중종 사유지 내 무단 사용한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

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 당시 김해김씨 형성공파 중종대표자와 협의 후 중종 사유지 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중종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중종 후손들은 중종의 장학사업을 위해 전남 강진군 덕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올 3월 강진군에서 진행했던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오후 2시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제31보병사단 93연대장, 전라시설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토지 사용료 지불 및 훈련장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제31보병사단은 2019년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수해 2020년 설립 예정인 강진예비군 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전라시설단은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해 중종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31보병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중종은 2019년까지는 이 해당 토지에 경제활동(가축사육) 및 가설건물 신축 등을 하지 않아 제31보병사단의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중종은 군사시설물의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사유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배상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군사시설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2015-07-14 10:52:12]

214 X 276 mm

8. 진부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번호 : 2CA-1410-307562 (국방보훈민원과)

<조정개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일대의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민원에 대해 民-官-軍 협의체를 구성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337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336명
- 피신청인 : 강원 평창군수, 육군 제○○사단장

2) 민원주요내용

- 진부비행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평창군에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진부비행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여 재산권행사 및 도시개발 필요
- (평창군수) 진부비행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이전필요, 따라서 법률에 따라 대체지 등 지원가능
- (육군 제○○사단장) 군사시설 부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음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4회), 관계기관 협의(5회)
- 군(軍)의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
- 신청인들은 재산권행사 및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평창군수) 신청인, 피신청인2와 民-官-軍 협의체를 구성(분기1회 추진경과 등 설명)하고,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2016. 12. 31까지 진부비행장 이전 대체지 선정
- (육군 제○○보병사단장) 진부비행장(G-417) 이전에 동의하고, 피신청인1과 협의하여 대체지 선정하고, 이전 대체지에 군사시설(항공)이 완공되면 절차에 따라 헬기예비 작전기지의 폐쇄 및 지정을 건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제한 • 도시개발 제한	•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가능 • 도시개발 가능

2) 시사점

- 약 11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군(軍)은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평창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도시개발 및 주민재산권 행사 가능

평창 진부비행장 42년 만에 이전 합의

마을 정중앙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강원 평창군의 진부비행장이 42년 만에 이전된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17일 평창군 진부면 사무소에서 주민과 36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를 통해 진부비행장을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평창군은 관할 부대 및 주민들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내년 12월 말까지 진부비행장을 이전할 대체 부지를 선정기로 했다. 또 대체 부지에 군사시설이 완공되면 곧바로 비행장을 이전

평창 진부비행장 약도



할 계획이다. 1973년 건립된 진부비행장은 초기에 군 작전비행장으로 빈번하게 활용됐으나 항공기 주력기종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빈도가 점차 낮아지자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해 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마을 한가운데 비행장’ 42년만에 옮긴다

진부비행장, 권익위 조정거쳐 이전
내년 12월까지 대체부지 선정기로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폐쇄를 요구했던 강원 평창의 군 비행장인 진부비행장이 42년 만에 이전이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주민과 육군 36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보면, 주민과 군 당국, 평창군은 민관군 협의체를 꾸려 내년 12월 말까지 진부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대체 부지에 군사시설이 완공되면 비행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진부비행장은 1973년 설치 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빈번하게 활용됐지만, 항공기 주력기종 변화 등에 따라 사용 빈도가 점차 낮아지자 주민들이 여러 차례 군당국에 폐쇄를 건의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군당국은 작전 수행을 위해 진부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절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 됐다.

2013년에는 강원도가 주관해 진부비행장

이전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주민 336명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주민, 군당국, 평창군은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한 끝에 폐쇄하지 않는 대신 이전하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사시설 이전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형군 평창부군수는 “진부비행장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이 꼭 필요했다. 이전하기로 합의에 이른 만큼 평창군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하루빨리 대체지를 선정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구 상진부3리 이장은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동안 마을 한가운데 있는 비행장 때문에 주민 피해가 극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군당국, 평창군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9. 경기 화성시 은장교차로 체계 개선 요구

민원번호 : 2CA-1408-226695 (경찰민원과)

<조정개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소재 은장교차로(이하 '이 민원 장소'라 한다)는 공장단지(20여 개 기업, 250여 명이 상시 근무)의 유일한 진·출입구인데,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어 좌방향으로 이동을 위해선 1.2km를 우회하여야 하고 또한 이곳에서도 컨테이너차량 등 장축의 차량들의 회전이 제한되니, 이 민원 장소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교차로체계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조정·중재

*기업 민원, 다수인 민원(256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255명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 관련기관 : 화성서부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20여 개 기업, 250여 명이 상시 근무하는 공장단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은장교차로가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어 공장단지 진출입을 위해 1.2km를 우회하고 있으니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차로를 개선해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도로공사 허가 주관 기관
- 도로공사 비용 부담 주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5년전부터 경기도,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에 은장교차로의 현행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관계기관들이 비용부담 주체 등이 걸림돌이 되어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음

- (경기도지사) 교차로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 322호선 본선 주행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보다는 공장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의 개선으로 이는 지방도 유지보수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신청인은 「도로법」에 따라 경기도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 화성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화성시장) 지방도 322호선의 부분확장을 위한 도로구역변경결과 고시 등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장기사업으로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시행주체(경기도)가 진행해야 할 사항임
- (화성서부경찰서장) 교통안전상 현재 도로조건에서는 좌회전신호기 설치가 불가하고 향후 가·감속차로 설치 등 안전상 확보 후 좌회전신호기 설치가 타당함

2) **민원특성** : 일명 핑퐁 민원, 기업민원, 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이 민원 처리를 위해 경찰민원과장이 실제 처리담당자(경기도, 건설국장)를 방문하여 협조 요청
- 담당조사관의 계속적인 업무관리 및 협조처리 요청

2) **갈등해결수단** : 업무분장 및 비용 부담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상급기관 법령해석

5. 조정 결과

- (경기도지사) 좌회전차로 추가설치 등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에 있어 도로안전시설(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차선도색 등) 공사를 부담 및 시행한다.
- (화성시장) 교차로개선공사에 있어 교통신호 통제시설(신호등, 신호제어기 등) 공사를 부담 및 시행하고, 교차로개선공사의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주체·시행시기·공사부담에 관하여 신청인과 추후 협의한다.
- (화성서부경찰서장) 교차로개선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비예산)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 (신청인) 공장부지 일부(차량 좌회전을 위한 최소한 부지)를 제공하고, 교차로개선공사의 그 외 부분에 대해 협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은장교차로에서 차량 좌회전 불가 • 일명 핑퐁민원으로 행정기관간 업무 처리 방치	• 은장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약 1.2km의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공장단지를 진·출입하는 물류차량 및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

2) 시사점

- 약 5년간 행정기관간 서로 업무처리를 미루던 이 민원을 우리 위원회의 과장 및 조사관이 피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업무처리 협조를 요청한 결과 이 민원이 해결
- 공장단지 진·출입하는 물류차량 및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

10.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 해소 요구

민원번호 : 2AA-1502-209241 (경찰민원과)

<조정개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주민과 상가이용객들은 용구대로 2469번길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는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2km이상을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지역경찰서·지방자치 간 조정·중재를 통해 다수인 민원을 해결

*다수인민원(251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송영숙 외 250명
- 피신청인 : 용인서부경찰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를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
-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 용인시 기흥구 죽전일성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 현황



2. 주요 쟁점사항

- 아파트를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수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진출입 좌회전을 조속히 허용
- (용인서부경찰서장) 좌회전 신호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기흥구청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부담 문제 해결 필요

2) 민원특성 :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등) 설치요구 민원, 경찰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2015. 2. 23) 이전에 피신청인 간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악화
(기흥구는 시공사측 비용부담 요구,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
-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2015. 4. ~ 5.)
-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피신청인들 수용의사 확인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용인서부경찰서장) 민원지점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 설치 요구에 대해 2015. 7월까지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기흥구청장) 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결되면 즉시 민원지점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부담을 한다.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아파트 거주 지역주민이 2km이상 우회 통행에 따른 불편 및 통행비용 유발 • 주민들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 (주민불편을 외면한다고 인식)	•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저감 • 기관간 협업으로 성과를 창출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주민신뢰 회복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회의 등을 통해, 경찰과 지자체 등의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 해결
-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탓을 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전체적으로는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등 부차적 효과 발생

권익위, 용인 기흥구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 현 장조정

【서울=뉴스시스】 박성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영보)는 22일 오후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죽전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의 죽전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은 지난 2010년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2km를 우회해서 진입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부터 용인서부경찰서와 기흥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라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기흥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dy0022@newsis.com

0.0 X 0.0 cm

권익위, 용인 기흥구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 현장조정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 설치 후 신호기 설치 합의

【대한뉴스/경인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영보)는 22일 오후 2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죽전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죽전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은 지난 2010년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2km를 우회해서 진입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부터 용인서부경찰서와 기흥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올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2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아파트주민 대표와 용인서부경찰서장, 기흥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후의 합의안을 주제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 기흥구청장은 신호기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214 X 92 mm

11. 전남 함평 강운삼거리~대창삼거리 구간 교통안전 조치 요구

민원번호 : 2AA-1504-317523 (경찰민원과)

<조정개요>

강운삼거리에서 대창삼거리 구간도로는 S자 굴곡(급커브)이 많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46건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한 고위험 구간이니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지자체·관할 국토관리사무소·관할 경찰서 등의 조정·중재를 이끌어내어 안전 조치를 이끌어냄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 관련기관 : 함평군수, 함평경찰서

2) 민원주요내용

- 전남 함평군 소재 강운삼거리에서 대창삼거리 구간도로는 S자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니 교통안전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교통안전시설 개선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46건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한 고위험 구간이니,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 요구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 민원 도로구간은 도로시설 개량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수립 추진중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지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함평군수, 함평경찰서장) 이 민원 도로구간은 상무대(17,000명) 이동통로로서의 이동 수요, 연례 지역축제 시 이동수요(함평나비축제 30만 명) 및 대규모 산업단지입지 예정 (빛그린국가산단 등)으로 교통량 급증이 확실시되므로 도로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민원 특성 : 안전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전라권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서 이 민원을 발굴하였고, 이 민원 구간 중 단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2016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구역’으로 선정하여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전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조치를 취함
- 이는 다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결토록 함

2) 갈등해결수단 : 단계적 해결 방안 제시

5. 조정 결과

- (함평군수·함평경찰서장) 이 민원 도로구간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2016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구역(반경 200미터)’ 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 (광주국토관리사업소장) 이 민원 도로구간 중 교통사고 잦은 곳·구역(반경 200미터) 개선사업대상에 선정되는 곳·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이 외에 최소 곡선반경 부족 등 도로시설기준에 미흡한 3개 구역에 대해서는 「국도 위험 도로 개량사업 기본 계획」 등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광주국토관리사업소장, 함평군수·함평경찰서장) 이 민원 도로구간의 전반에 걸친 도로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46건 발생, 9명 사망	• 교통사고 예방으로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해소

2) 시사점

- 이 민원 구간의 주민들은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요구해 왔지만,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교통사고 잦은 곳·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대해 함평경찰서와 함평군은 합심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구역 구역에 해당되도록 노력(업무 방치 방지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교통사고 잦은 곳·구역에 해당될 시 공사를 실시토록 조치

12. 도원교 입구 교통사고 방지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510-130692 (경찰민원과)

<조정개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소재 도원교 동쪽 입구 도로지점은 선형의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최근 3년간 사고 11건, 사망 1명, 부상 20명)하고 있으니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장기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충청북도 괴산군수
- 관련기관 : 괴산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소재 도원교 동쪽 입구 도로지점은 도로선형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방지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도로선형 굴곡이 심해 차량속도를 30km/h~40km/h로 감속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장 이설 및 쓰레기장 이설
- 장기적으로 선형개선 시행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교통사고 방지대책 요구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민원 지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국지도 32호선 직선구간과 군도(후평도원로)를 직선구간으로 선형개선하여 도원교 입구를 4지(십자형)교차로로 변경(신호등 설치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산관계상 곤란

- (괴산군수) 이 민원 지점에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장 이설을 추진
- (괴산경찰서) 이 민원 지점에 교통안전시설(갈매기표지판 추가설치 및 도로유색 포장)의 개선이 필요하고,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장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이동과 수시 잡초 제거가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5. 10. 1. 고충민원 접수)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가 시행중인 '교통안전시설 집단 (잠재)민원 실태조사 및 해소' 사업의 제3단계인 충청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발굴('15. 7월)·접수된 민원으로서, 우선해소대상 5개 지점 중 하나임.
- ('15. 10. 8. 실지조사) 충북국도관리사무소, 괴산군청, 괴산경찰서 직원 참석 하에 이 민원 해결방안 논의, 단기적으로 교통표지판 정비 및 과속방지턱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장기적으로 도로 선형개선
- ('15. 11. 18.) 현장조정 사전회의
- ('15. 12. 23.) 조정서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해결이 가능한 단계적 방안 제시, 장기적 방안은 상호 협조 후 추진

5. 조정 결과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2016년도 상반기까지 이 민원 도로부분에 추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자체발광형 갈매기표지 및 반사경 설치와 수시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도로이탈 방지를 위해 노변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며, 장기적으로는 괴산군과 협조하여 국도 32호선 구간과 군도를 직선구간으로 선형개선하여 도원교 입구를 4지(십자형)교차로로 변경 및 신호등 설치를 추진한다.
- (괴산군수) 2016년도 상반기까지 버스정류장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이설하며, 장기적으로 위 선형개선 및 4지(십자형)교차로화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과 협력한다.
- (괴산경찰서) 이 민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인근 화양계곡 유원지 발전 저해 및 휴양 온 차량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	• 인근 화양계곡 유원지 활성화 •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 방지

2) 시사점

- 충청권交通安全시설 개선사업에서 발굴하여, 충청북도·괴산군·괴산경찰서 협업을 이끌어내어 해결

13. 가좌역 인근 아파트 철도·도로 소음저감 대책 마련 요구

민원번호 : 2AA-1503-100736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정개요>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경의선 구간에서 주야간 수백차례 열차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도소음과 아파트 앞 수색로에서 발생한 도로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주거 생활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니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흡음률이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서울시에서는 ‘교통소음 관리 시범 지역’으로 지정 및 저소음 포장을 하여 소음 저감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소음민원, 다수인민원(2490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민○○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 관련기관 : 한국철도공사, 서대문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 앞 철도·도로소음으로 입주민들이 주거 생활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니 소음방지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철도 설치 이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 민원 수용은 곤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철도·도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곤란

- (서울특별시시장, 서대문구청장) 아파트 주민들이 철도·도로소음을 인지하고 입주함
- (한국철도공사) 엔진소음이 높은 디젤기관차는 최소화 운행 중

2) 민원특성 : 철도 도로 소음관련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협의(4회 : '15. 3. 31, 4. 14, 5. 20, 5. 26)
- 철도·도로 소음 대책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법령해석 등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아파트 앞 약 570m 구간에 흡음률이 높은 방음벽을 설치
- (서울특별시시장) '교통소음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 및 저소음 포장 우선 시행
- (한국철도공사) 디젤기관차 감축운행 노력 및 기적소음 자제 등
- (서대문구청장)주기적 소음측정 등 교통소음관리 강화 및 조정내용 이행 지원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소음 측정결과 야간 소음이 기준치 초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도로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생활이 방해됨	• ○○아파트 인근에 방음벽 및 저소음 포장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 조성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14. 영동선 용인지역 아파트 교통소음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405-30509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정개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 인접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확장(6차선→10차선)과 석성로(왕복 6차선)의 합성 교통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니 방음대책을 간구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용인시장은 석성로에 저소음 포장 및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소음민원, 다수인민원(1219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황○○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사장, 용인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에 인접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석성로 합성 교통소음으로 주거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소음방지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아파트의 주·야간 소음이 기준치를 상회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시 모두 방음대책 마련 필요성 인정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도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
- (용인시장) 추가 방음벽을 연장 설치하여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
- (한국도로공사사장) 2011년 영동고속도로 확장이후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돌출 차선 제거공사,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인근에 위치한 석성로와의 합성 교통소음으로 인해 법상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공동대책 마련이 필요

2) 민원특성 : 도로 소음관련 민원, 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협의(4회 : '15. 3. 31, 4. 14, 5. 20, 5. 26)
- 영동고속도로와 석성로의 합성 소음 대책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법령해석 등

5. 조정 결과

- (용인시장) 소음포장과 석성로 출구 2개소에 승용차 통과 최소 폭 2.5m만 남기고 기존 방음벽 구조물과 일치되도록 방음벽을 추가 설치
- (한국도로공사) 저소음포장과 기 설치된 방음아크릴판을 흡음판으로 교체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소음 측정결과 영동고속도로와 석성로의 합성소음으로 인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어려움	•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으로 주거 생활 안정화

2) 시사점

- 영동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지방도로인 석성로를 관리하는 용인시가 교통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파트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성사될 수 있었음

15. 광해방지시설 피해보상 요구

민원번호 : 2BA-1507-2516982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정개요>

신청인은 광해방지시설(폐광미) 관리소홀로 공장신축을 못하게 되었으니, 폐광미가 매몰된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미의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하고, 지적현황 측량으로 광물씨꺼기저장 시설의 경계확정을 하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가 있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지원하며, 기장군수는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철회하고, 신규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협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하도록 조정·중재

*기업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부산 기장군수

2) 민원주요내용

- 광해방지시설(폐광미) 관리소홀로 공장신축을 못하게 되었으니, 폐광미가 매몰된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광물씨꺼기저장시설의 관리를 위해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민원 토지는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문제로 공단의 토지매입 의무는 없음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30~40cm 굴토한 시점에서 폐광미가 발견됨에 따라 기장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공장신축을 못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광해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니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 민원 토지는 토지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문제로 공단의 토지매입 의무는 없음
- (기장군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7년도 신설됨에 따라 관련서류 일체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건축허가 승인당시 이 민원 토지가 광해방지시설인지 인지할 수 없었음

2) 민원특성 : 기업관련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미의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하고, 기장군수는 민원 토지상의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철회하며, 신규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협의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승인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정 .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협의(3회 : '15. 8. 11, 9. 11, 9. 23)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미의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하고, 지적현황측량으로 광물찌꺼기저장시설의 경계확정을 하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를 있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지원하고,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상에 공시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지원
- (기장군수)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철회하고, 신규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협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공장 설립 무산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피해 발생	•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상에 공시

2) 시사점

- 광해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건축허가청인 기장군간의 광해방지 업무 협조부족으로 발생한 2년 6개월간의 오래된 민원을 위원회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현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에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광미가 매몰된 토지에 대한 공시규정이 없어 토지거래 시 매수자나 제3자가 전혀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것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에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광해방지시설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됨

16. 국도 77호선 부체도로 접속구간 포장 요구

민원번호 : 2CA-1509-240531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정개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왕복 6차선인 국도 77호선의 부체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부체도로에서 농경지로 접속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의 진·출입이 곤란하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접속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부체도로에서 농경지로 진입하는 접속구간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로포장을 실시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43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신○○ 외 42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왕복 6차선인 국도 77호선의 부체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부체도로에서 농경지로 접속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의 진·출입이 곤란하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접속구간 포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부체도로와 농경지 접속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타당성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부체도로와 농경지 접속구간이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의 진·출입이 곤란
- (한국수자원공사) 타 현장 적용사례 조사 및 적용 기준 등을 조사하여 동 현장 내 반영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2) 민원특성 : 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부체도로에서 농경지로 접속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로포장을 하도록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회 : '15. 10. 14, 10. 29, 11. 6, 11. 10)
- 화성시의 농로포장 구간 조사결과 농경지 접속구간 포장 확인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부체도로에서 농경지로 진입하는 접속구간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로포장을 실시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부체도로에서 농경지로 접속구간에 대한 포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 진·출입 곤란	• 농경지 접속구간에 대한 포장으로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

2) 시사점

- 약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접속구간 포장으로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농사를 짓는데 애로 해소

17. 조치원역 인근 철도소음피해 방지대책

민원번호 : 2BA-1509-149782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정개요>

조치원역 부근 철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크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흡음률이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추후 세종시에서는 도로 포장시 저소음 포장을 하여 소음 저감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204명), 소음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 외 203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기관 : 세종특별시장, 한국철도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조치원역 부근 철도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소음 방지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설치 이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그동안 철도 운행횟수의 증가로 인해 철도소음이 계속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현지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가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세종시에서는 연접도로 설치 시 복합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철도 소음량 증가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사업자가 방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세종특별시장)이 민원 발생지역의 철도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은 발생원의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강구해야 함
- (한국철도공사) 엔진소음이 높은 디젤기관차는 최소화 운행 중

2) 민원특성 : 소음,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설득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협의(5회 : '15. 11. 9, 11. 14, 11. 25. 12. 3, 12. 9.)
- 철도 소음 대책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피신청인과 관계자 이해·설득, 법령해석 등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조치원역구내 약 570m 구간에 흡음률이 높은 방음벽을 설치
- (세종특별시장) 추후 도로 재포장시 저소음 포장 및 필요시 속도제한 등의 조치
- (한국철도공사) 디젤기관차 감속운행 노력 및 기적소음 자제 등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잦은 철도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면 장애 등 극심한 생활피해 호소	• 조치원 역 인근에 방음벽 설치 및 인근 도로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설득을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차후 발생될 복합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등 철도시설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18.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 조건 취소

민원번호 : 2CA-1502-068163 (주택건축민원과)

<조정개요>

서울 ○○구 ○○동 산70-1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 십 년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이미 개설되어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취소하도록 조정 해결

* 다수인민원(106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외 105명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수년 간 차량 통행에 이용되던 도시 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 재건축 사업 인가조건으로 사유지를 매입 기부채납 요구하며 사용검사를 지연하고 있어 2,600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2. 주요 쟁점사항

-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속하는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1975년부터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던 ○○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새로이 설치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 인가조건 무효 요구
- (○○구청장) 재건축조합 관리처분인가 내용에 ○○로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비용이 포함 되어 있었고, 조합에서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 인가조건 무효 확인을 확정해야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

2) 민원특성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 요구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유권해석 등을 통한 이해·설득을 통한 조정해결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회 : '15. 2. ~ '15. 3.)
-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관리되고 있는 ○○로는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설득 기부채납 조건을 취소하도록 조정

2) 갈등해결수단 : 대안 제시, 이해·설득, 법원의 유사 판례,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

5. 조정 결과

- (신청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기부채납 조건 취소 요청) 요청
- (○○구청장) 변경(기부채납 조건 취소 요청) 신청될 경우 즉시 변경인가 처리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조합원 - 도시계획도로(폭12m)에 편입된 미 보상 사유지 5필지 매입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유지 매수 조합원 부담 - 사유지 매입비용(25억 원) 추가부담 및 매입 지연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불편	● 조합원, 일반분양자 - 정비사업 사용검사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 등 재산권 행사 가능 - 조합원 : 추가 부담금 손실 해소

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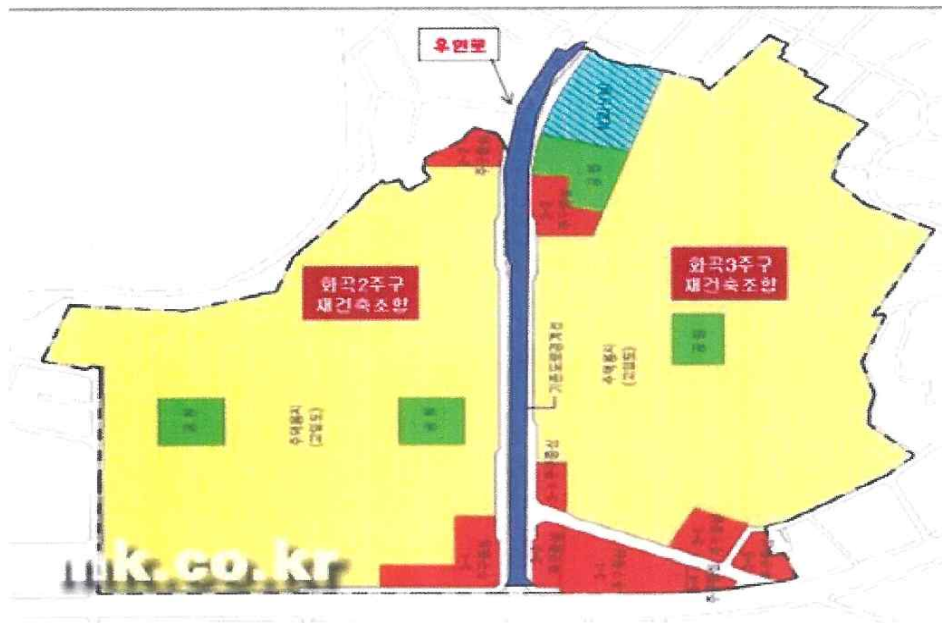
- 조합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합원 부담 경감



강서 화곡 재건축 2600세대, 준공 지연된 이유가...

[프린트](#)
[x 닫기](#)

2015-03-18 17:16



↑ [자료 권익위]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의 재건축정비사업 인가조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 민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와 2주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12m의 우회로를 25m로 확장개설하면서, 기존 12m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5개 필지 1114㎡, 감정평가액 약 25억원)를 매수해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미뤄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폭 12m의 우회로는 지난 1976년경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로써,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에게 12m 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재건축 인가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조건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후 권익위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합의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은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19. 아파트 공사피해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505-056046 (주택건축민원과)

<조정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순천 ○○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인접한 ○○아파트 진출입 차량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되니 주차장 추가확보, 우회 진입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달라.

* 다수인 민원(528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마을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 ○○○ 외 527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 순천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신축아파트 진입을 위한 추가 도로 개설, 사업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대수 추가 확보, 기존 아파트 조망권을 고려한 신축 건물 배치계획 조정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진입도로 추가 개설,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에 따른 비용 부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신축 아파트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대책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기준을 초과한 추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 곤란
- (순천시장) 우회도로개설 비용 부담 재원 마련 곤란(정부지원 요청)

2) 민원특성 : 관계기관 책임 소재로 비용부담에 다툼이 있는 고충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으로 우회 도로 개설, 주차대수 추가 확보, 건물 배치계획 변경 조정안 도출

- 현장조사(4회 : '15. 5 ~ '15. 11)
- 추가 비용 분담 및 당초 설계안 변경을 통한 민원 해소방안 논의

2) 갈등해결수단 :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중재 의견 제시

- 우회도로 개설비용 기관별 분담,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신청인 요구 건축계획 반영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차대수 추가 확보,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 우회도로 개설 비용 분담
- (순천시장) 우회도로 개설비용 분담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비용분담 문제, 역할 조정 지연 시 신청인 등 인근 주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 지출 • 주택사업 지연으로 지역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입주 지연	• 우회도로 개설, 주차대수 추가 확보를 통한 인근 아파트 교통 불편 해소 •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가능

2) 시사점

- 관계기관의 도로개설 비용부담 및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함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 갈등에 대해 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기관별 비용부담 조정으로 민원 해소 및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

순천시 서면 배들아파트 대책위, 선평3지구 공사저지 선언

진입로, 주차장, 조망권 등 주민민원 해결 안 되면 공사 중단

2016년 06월 28일 (일) 16:44:09

위종선 기자 wjs8852@siminilbo.co.kr



[순천=위종선 기자] 전남 순천시 서면 배들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선평3지구아파트건설피해 대책위원회가 관계기관의 대책마련 요구에 나섰다.

지난 27일 대책위는 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 건립되는 선평3지구아파트의 시행사인 한국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비전과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탁상 행정으로 인해 국가가 하는 일에 원주민은 피해가 뵈히 보이는데 당하고 감수하라. 이걸 내가 원주민을 상대로 하는 권력의 슈퍼 갑질 횡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배들마을아파트 900세대와 인근 자연부락선평마을 100여세대가 살고 있는 뒤편에 LH공사가 18층 규모의 선평3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입로와 주차장, 조망권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의 방조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또 “순천시가 지난 1월 29일 아파트 민생탕방 당시 진입로 공동 사용 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공감하고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 및 건설 하겠다고 한 조충훈 시장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들은 “주민 피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저지시키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헌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의 불편사항 및 향후 피해를 먼 산 바라보듯 관망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차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 책임은 한국주택공사, 순천시,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답변에 최종 결정권자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선평3지구아파트건설피해 대책위원회는 대책위 구성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선평3지구 아파트 건립으로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피해 대책마련 차원에서 공사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5월 18일 출범식을 가졌다.

20. 울산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구

민원번호 : 2BA-1409-276830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울산 혁신도시사업지구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가 없어 1,200m이상 우회하는 등 공동주택, 사찰, 농경지로의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좌회전 허용 등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입주민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도록 조정 해결

*다수인민원(724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공동주택 입주자 권○○ 외 723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장관,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울산중부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울산혁신도시사업지구내에서 공동주택, 사찰, 농경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좌회전 허용 등 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과차량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좌회전 허용 등 교통개선대책 수립 적정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출퇴근시간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고, 기존 통행로가 폐쇄되었으므로 통행로 복원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좌회전 허용 불가
- (울산광역시경찰청·중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겠음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724명), 안전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각 기관 이해·설득을 통한 조정해결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회 : '14. 10. 30, '14. 12. 3),
- 좌회전 허용 등 교통개선대책 변경 수립을 통한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대안 제시, 이해·설득,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개선대책안 수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비용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울산광역시경찰청장·중부경찰서장)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공동주택 입주민 - 1,200m 우회로 출퇴근시간대 주변지역 정체 ● 종교시설 출입자·경작자 - 기존 통행로 폐쇄로 종교활동 및 생계 활동에 많은 지장	● 공동주택 입주민 - 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통과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및 출퇴근시간대 교통정체 완화 ● 종교시설 출입자·경작자 - 원활한 종교활동 및 생계활동 유도

2) 시사점

- 공동주택, 종교시설, 농경지로의 차량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습적인 교통 정체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익위 중재로 울산혁신도시 진출입 불편 조정안 마련

(울산=뉴스1) 조창훈 기자 | 2015-02-13 14:39:22 송고



13일 울산 혁신도시 중가로 인근에서 정춘수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단장이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교통개선대책안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조창훈 기자

울산혁신도시 중가로와 연결된 도로의 좌회전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울산 중구 중가로 에일린의 뜰 3차아파트 앞 중가로를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확정했다.

중구 중가로와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 앞 도로는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해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한불교 선교종 남천암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진출입로가 없다보니 매번 주민들이 1200m 이상을 우회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했지만 통과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에일린의 뜰 아파트 주민 494명, 남천암 관계자와 신도 212명, 인근 주민 15명 등 총 721명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와 관계기관은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의에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대표,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이명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김진우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참석했다.

최종 합의 된 조정안에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종가로로 좌회전 하는 차선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옮겨 보행신호 시 가능하도록 했다.

종가로에서의 진입은 도로 여건상 추가 좌회전 차선 마련이 여의치 않아 기존 에너지관리공단(600m)앞 유턴 차선을 한국석유공사(200m)후문으로 옮기기로 했다.

권경호 에일린의 뜰 3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을 마련하기에는 교통정체 유발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도 이해했다. 조정안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정춘수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단장은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 경전선복선화사업 철도횡단 수로암거 확장 요구

민원번호 : 2BA-1412-343818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전선복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에 위치한 철도횡단 수로암거를 폭 3m로 작게 설계하여 신시마을과 인근마을 및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니, 이 민원 철도수로암거를 10m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재로 관계기관 간 비용분담 방안을 이끌어내어 해결

* 다수인민원(109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시마을 000 외 108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양시장

2) 민원주요내용

- 민원마을 및 농경지 침수 방지 위해 철도수로암거 확장(3m → 10m)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철도수로암거의 규격 확장 설치에 따른 비용 분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마을 및 농경지 침수 방지 위해 철도수로암거의 규격 확장이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수로암거 확장에 따른 비용은 광양시 부담이 타당
- (광양시) 철도수로암거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시 소하천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격을 확보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추가 비용은 철도시설공단 부담이 타당

2) 민원특성 : 관계기관간 책임 소재로 비용부담에 다툼이 있는 고충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으로 철도수로암거 확장 및 배수로 설치, 행정적 지원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2회 : '15. 1 ~ '15. 2), 관계기관 협의('14. 3. 4)
- 추가 비용 부담 및 당초 설계안 변경으로 추가비용 저감방안 논의

2) 갈등해결수단 :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중재 의견 제시

- 철도수로암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 배수로는 광양시가 부담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민원 철도사업부지 내 폭 3m의 수로 암거를 폭 10m(L=40.36m)로 확장하여 2015. 12. 31.까지 설치
- (광양시장) 철도수로암거에 연결되는 배수로(L=37m, 이하 '배수로 1')와 철도수로암거에서 수어천까지 연결되는 배수로(L=17m, 이하 '배수로 2')를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경전선복선화 사업 지연 우려 • 철도수로암거의 폭과 소하천의 폭 불일치로 폭우시 배수 병목현상 발생	• 민원 마을 및 농경지 침수 우려 해소 •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가능

2) 시사점

- 관계기관의 비용부담 및 책임소재 공방으로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및 관계기관의 대안 검토를 통해, 기관별 비용부담 조정으로 민원 해소 및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시마을 주민들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전선 철도 밑 수로암거시설의 폭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으로 해결됐다.

수로암거시설은 지하에 매설한 인공 배수로로 말하며, 수로가 제방·도로·철도 등의 축제를 가로지를 때나 지하에 하수도를 시설할 때 이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신청인 대표와 지역주민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광양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양시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해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지역의 마을주민들은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크게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집중폭우가 내릴 때마다 항상 수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전선 복선화사업(광양~진주)을 진행하면서 진상면에 위치한 철도 밑 수로암거시설의 폭을 종전의 규격인 3m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은 수해 예방을 위해 폭을 10m로 확장해 달라며 작년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로암거시설의 확장에 대한 추가비용은 광양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광양시는 철도시설공단이 수로암거시설 및 연결배수로 확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권익위는 중재안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상면에 위치한 철도 수로암거(길이 40.36m)의 폭을 기존 3m에서 10m으로 확장 설치하고, 광양시는 철도 수로암거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의 폭을 10m로 확장해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배수시설 구간을 나눠 철도 사업부지 내의 배수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고 그 외의 배수시설은 광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songbk@kukimedia.co.kr

22. 택지개발로 단절된 진출입로 및 오수관로 연결 요구

민원번호 : 2AA-1412-021010, 2CA-1412-333286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청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후문 진출입로가 경관녹지에 가로막혀 단절되고, 이전 신축 관리동의 오수관로를 외부로 연결하는 데 애로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협조로 후문 진출입로 및 관리동 오수관로가 외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기업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 대표이사 이○○
- 피신청인 : 경기도 화성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주요내용

- 경관녹지로 단절된 후문 진출입로 연결 요구
-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후 신축된 관리동 오수 처리 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후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성 및 공사 주체
- 관리동 오수관로 외부 연결 가능성 및 공사 주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택지개발사업으로 후문 진출입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당초와 같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하여야 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리동 오수를 처리할 경우 높이 차이에 의한 가압 등 필요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없이 후문 진출입로를 완충녹지 안에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시 관리동 오수관로 계획이 포함될 경우 시설 인수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후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공사, 행정절차 등은 신청인이 추진해야 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곳으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3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결 방안 모색
- 오수관로 연결 지점 중재안 제시, 후문 진출입로 개설 방안 협의
- 기술적으로 가능한 오수관로 외부 연결 지점을 찾아 공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후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계획변경, 공사 등을 실시키로 조정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후문 진출입로 개설, 관리동 오수관로 외부 연결 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시행
- (화성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사 추진에 동의하고 행정절차 추진에 협조
- (신청인) 오수관로 외부 연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리베라CC 후문 진출입 단절 • 비효율적 방법(가압, 부지내 관로 공사)으로 관리동 오수 처리	• 리베라CC 접근성 제고 •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동 오수 처리

2) 시사점

-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웠던 후문 진출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 권익위가 개입하여 계획 변경의 명분 제공
-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오수 처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연결 방법 제시·민원 해결

화성동탄 사업장 진출입로 단절 해결

권익위, 택지개발계획 변경 연결토록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골프장 진출입로가 단절되고 골프장의 관리동을 잇는 오수관로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프장 업체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A골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후문의 주변이 완충녹지로 지정돼 사실상 출입하는 도로가 단절되었다.

기존 골프장 관리동도 철거해 다른 곳에 신축했지만 오수관로를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연결할 마땅한 곳이 없자, 골프장 업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완충녹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골프장 업체와도 협의해 이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오수관로 시공이 일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골프장의 후문 진출입로를 기존처럼 사용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당초 계획상 관리동 오수관로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오수관로와 연결하는 지점이 경사가 맞지 않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7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화성시, 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여 기존과 같이 골프장의 후문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신축된 골프장 관리동 오수관로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오수관로에 연결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오수관로 연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종찬 기자/jonghapnews.com

176 X 114 mm



최학균 상임위원 현장 조정회의 주재

기사등록 일시 [2015-04-17 18:49:25]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사업장 진출입로 단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중재하고 있다. 2015.04.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LiveRe Widget

좋아요	슬퍼요	유익해요	화나요	황당해요
0	0	0	0	0
0	0	0	0	0

photo@newsis.com

23. 군자마을 문화재 복원 요구

민원번호 : 2AA-1411-111494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멸실된 후조당 종택(중요 민속문화재 제227호) 안채 복원을 위하여 국비 등을 지원받았으나, 「산지관리법」상의 규제로 복원을 못하고 있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후조당 종택 안채 등 유사한 문화재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복원 등의 건축행위시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고시를 개정하여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도록 조정 해결

*다수인민원(378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광산김씨 예안파 종중 종손 김○○ 외 377명
- 피신청인 : 산림청장, 경북 안동시장, 한국수자원공사
- 관련기관 : 문화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군자마을의 멸실된 후조당 종택 안채의 복원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후조당 종택 안채 등 유사한 문화재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복원 등의 건축행위시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고시의 개정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군자마을의 멸실된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복원이 어려움
- (산림청장) 복원 문화재 건축 예정부지는 공익용산지로 「산지관리법」상 법정도로 등 산지전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산지전용이 불가함
- (안동시장) 산지전용과 문화재 건축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한국수자원공사) 군자마을을 포함한 안동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
-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에는 도로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규제완화 및 기관협업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 이해·설득을 추진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3회 : '15. 1. 8, 2. 5, 3. 24 ~ 25), 관계기관 협의(6회), 출석조사(1회)
- 오래된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어 고충을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대안(산림청 고시 변경)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문화재청장) 산림청 고시 개정을 위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송부
- (산림청장) 문화재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복원 등의 건축행위시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고시 개정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 군자마을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 (안동시장) 문화재 복원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 추진, 향후 군자마을의 정상화 방안 마련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1976년 대규모 국책사업인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600여년간 거주한 터전을 잃고 이주된 군자마을의 멸실된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안채복원을 위하여 국가 예산 등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산지전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복원과 예산활용이 어려워짐	• 관계기관 의견을 조율, 문화재 복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함으로써 복원이 가능해져 40년만에 광산김씨 종중의 숙원사업을 가능케하여 숙원을 원천적으로 해결

2) 시사점

- 다수의 관계기관,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건축법」 등 많은 관계법령과 쟁점이 존재하여 대안 도출이 어려웠으나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어 민원을 해결

- 고시 개정으로 이 민원 문화재 복원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전국의 문화재,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관련 민원 해소와 경제적 편익 발생 및 행정적 비용 절감 기대



현장에서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 A N C ▶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열렸는데요.

내용이 중대한 사안은 일부 해결되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에게는 과연 피부에 와닿는
현장해결이 되는지 조동진기자가 취재합니다.

◀ E N D ▶

◀ V C R ▶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의 종택별당인
후조당입니다.

광산김씨 문중은 중요민속문화재인 후조당
안채를 복원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받았지만
산지관련 규정때문에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시와 산림청,수자원공사,
문화재청 등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도록 산지전용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합의했습니다.

◀ I N T ▶

김재수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합의를 통해)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고시가 변경된다면 모든 전국의 문화재가 증개축이 손쉬워지고 문화재 관리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동시청에서 개최한 이동신문고에는 32건의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행정기관간의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도 있는가 하면 개인민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 S Y N ▶

김영균 -안동시 와룡면-

"(FTA자금) 지원받으려고 매년 담당자 찾아갔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 I N T ▶

박문수 특별조사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아픔과 고충,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이동신문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권익위가 찾기 전에 해결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클로징)

민원해결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규제완화와 행정기관의 업무협조 등 제도적인 대책이 뒤따를 때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24. 공기마을 배수시설 설치 요구

민원번호 : 2BA-1412-331458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광양 공기마을은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배수시설 설치를 못하고 있어 자연재해 등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항만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 하도록 조정 해결

*다수인민원(203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202명
- 피신청인 : 광양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배수시설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배수시설 설치로 잠식되는 항만시설의 대체부지 확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배수시설 설치 요구
- (광양시장) 기존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에 배수시설 설치 필요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물 야적, 대형차량 출입을 위한 항만운영 공간이 잠식되므로 배수시설 설치 불가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안전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각 기관 이해 · 설득을 통한 조정해결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출석조사 (4회 : '15. 1. 29, '15. 2. 25, '15. 3. 19, '15. 5. 7)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면담('15. 4. 2)
- 항만시설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항만시설의 대체부지 확보

2) 갈등해결수단 : 대안 제시, 이해·설득, 기관장 면담 등

5. 조정 결과

- (광양시장) 태인부두에 배수시설 설치, 배수시설 준공 이전에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항만시설 대체부지 조성공사 비용 부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 대체부지 조성공사를 광양시와 협의하여 추진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중호우시 마을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 배수시설 설치로 침수피해 예방

2) 시사점

- 국책사업 등으로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피해를 보고 있던 궁기마을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담보되는 방안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마련



국민권익위, 광양시 궁기마을 배수펌프시설 설치 조정

기사승인 [2015-05-19 16:04]

상습적 침수피해 예방대책 마련
행정기관간 의견조정 실패로 권익위 나서

광양/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정보, 이하 권익위)는 19일 오후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광양시 궁기마을 주민 20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광양시 태인동 궁기마을 배수시설 설치요구 현장조정회의 마치고 기념촬영. (좌로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사장, 정현복 광양시장, 의뢰인 김충현,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

광양시 궁기마을은 2013년 명당2산단 조성공사 이후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광양항 및 광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배수가 불량해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광양시는 침수피해를 대책마련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양항 태인 부두 적재장 후면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가졌었다.

그러나 여수지방해양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야적장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출입을 위한 부두 운영공간이 줄어들어 항만운영에 많은 지장이 생겨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난색으로 인해 광양시 태인동 궁기마을 주민들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9일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에서 궁기마을 주민 대표와 광양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태인동 궁기마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과 광양시장이 조정서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합의로 광양시는 태인부두 내 배수펌프장을 2016년 6월 이전까지 설치하고, 배수펌프장 준공 이전에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금년부터 홍수피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태인부두 내 배수펌프장 설치에 동의하고, 배수펌프장 설치로 감소되는 태인부두 대체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소요면적 및 조성비용을 광양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체부지 조성비용은 광양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를 통해 조정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집중호우 시 배수가 불량하여 궁기마을 주민들이 고통이 많으셨는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더 이상 침수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kynews@paran.com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25. 임천지구 산청측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요구

민원번호 : 2BA-1503-263041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산청군 서하마을의 진입도로인 군도 15호선이 집중호우시 침수되어 마을이 고립되고, 일부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바,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산청측 하천사업이 제외되고 함양측 하천사업만 시행하게 되면 산청측 도로 및 주택·농경지의 침수 횟수 및 기간이 늘어나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함양측 하천사업과 함께 산청측 하천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325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경상남도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 외 324인
- 피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산청군수

2) 민원주요내용

- 함양측 하천사업만 시행하게 되면 산청측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함양측 하천사업과 함께 산청측 하천사업도 같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제방 축조의 필요성
- 제방 축조비용 부담의 주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산청측 하천사업도 같이 추진 필요
- (산청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일부(50%) 부담하여 산청측 하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임천지구 산청측 구간은 하천구역 밖으로 산지부가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의 제방축제가 필요치 않으며, 도로침수는 도로사업 또는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하천구역 내와 하천구역 외 도로를 분리하여 기관별 비용을 분담하여 하천사업 추진하기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3회 : '15. 4. 24, 5. 22, 7. 3)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법률 자문

5. 조정 결과

- (경상남도지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면 하천구역 내 사업을 지체없이 추진
- (경상남도지사·산청군수) 이 민원 도로를 홍수방어벽 높이로 높이는 사업을 하천 사업과 병행하여 조속하게 추진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함양측 하천사업만 시행하게 되면 산청측 도로 및 주택·농경지의 침수 횟수 및 기간이 늘어나 침수피해가 가중 예상 • 함양측 사업만 추진함에 따라 산청지역 주민의 소외 발생	• 산청측 침수피해 예방 • 지역 주민 간 화합의 계기 마련

2) 시사점

- 관계기관 간 양보와 배려에 기초한 협업을 통해 30년 이상 겪어 온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의 계기 마련
- 집중호우 시 서하마을 주민들의 도로침수로 인한 마을 고립 및 주택, 농경지 침수로 인한 불편 해소에 기여

권익위, 산청 임천지구 상습 침수피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인근 서하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 마을은 군도 15호선을 통해 마을로 드나들고 있으나 집중호우 때면 지리산에 내린 빗물로 임천강 옆 진입도로가 잠겨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수년간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다.

도와 산청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임천지구(산청·함양 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산청 구간은 하천구역 바깥 산지부(山地部)가 독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마을 주민 325명은 지난 3월 권익위에 마을의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를 거쳤다.

이날 권익위는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적극 중재에 나서 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를 나눠 하천구역 내에 홍수 방어벽 등을 설치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산청군도 하천구역 바깥 도로를 높이는 방안 등을 도와 협의한 뒤 방어벽 설치사업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에는 주민 대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산청군수가 참석했다.

shchi@yna.co.kr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산청 임천지구 상습 침수피해 해결

권익위, 하천구역 내 홍수방어벽 등 설치·도로 높여 도로침수 방지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32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앞 오른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정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32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군도 15호선을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지리산에 내린 빗물이 지방하천인 임천으로 흘러내려와 진입도로가 침수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 왔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이러한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산청측, 함양측)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임천지구 산청측 구간은 하천구역 밖으로 산지부(山地部)가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의 제방 축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서하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침수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서하마을 주민 대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산청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내 홍수 방어벽·호안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분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안공’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기슭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를 이용, 계곡의 기슭을 막는 공작물이다.

아울러 경남도와 산청군은 하천구역 외 도로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 하천구역 내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서하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으로 서하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이 담보되는 방안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6. 동수원 IC암거를 이용한 보행로 개설 요구

민원번호 : 2AA-1506-292147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수원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의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0m를 우회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내 기존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안전한 보행데크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해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정

*다수인민원(223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한○○ 외 222명
- 피신청인 :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장, 한국도로공사
- 관계기관 : (주)○마트

2) 민원주요내용

-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내 기존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

2. 주요 쟁점사항

- 보행로 설치를 위한 비용부담 주체 및 행정절차 이행방법 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내 기존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 요구
- (경기도시공사) 보행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하겠음
- (수원시장)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에 보행로 설치는 불가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한국도로공사) 당초 암거를 폐쇄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고려하여 암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음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안전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각 기관 이해·설득을 통한 조정해결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5회 : '15. 7. 16, '15. 7. 24, '15. 7. 28, '15. 8. 7, '15. 8. 13)

2) 갈등해결수단 : 대안 제시(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관계기관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경기도시공사) : 완충녹지 보행로 설치,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CCTV 설치계획 검토
- (수원시장) : 보행로를 (주)이마트로부터 인수받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한국도로공사) : 동수원 IC 도로구역과 완충·경관녹지간 지적측량 경계선 조정
- ((주)○마트) : 경관녹지 구간에 보행로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1,000m 우회	• 보행로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

2) 시사점

- 광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주민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마음을 여니 '1000m 돌아가던 길' 코앞이더라

광고 주민 "막힌 보행로 뚫어달라" 민원에 권익위 중재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5년 09월 02일 수요일 제18면



▲ 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수원 광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고속도로로 꽉 막힌 보행길이 상생과 협력을 통한 기업과 민·관의 합의로 '뺑' 뚫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주민들이 요구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고동 대학로마을과 이마트 광고점을 잇는 보행로를 관련 기관과의 원만한 합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이곳 광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그 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온 집단민원을 중재했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아래에 위치한 기존 지하통로를 이용해 마을과 대형 마트를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 한관희씨와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정진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장, 이영수 (주)이마트 광고점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보행로를 설치를 최종 합의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와 이마트 광고점은 각각 완충녹지 구간과 경관녹지 구간에 보행로 설치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이마트가 보행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원시와 공동으로 보행로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이마트가 설치한 보행로를 인수받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지하통로 점용허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광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주민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상생과 협력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뤄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광교 단독주택용지 주민 223명은 "인근에 개점 예정인 이마트 광고점을 걸어서 이용하려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때문에 1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등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7. ○○택지개발사업 도로선형 변경 요구

민원번호 : 2BA-1506-018917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정개요>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연계하는 현 도로계획으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여 □□정비사업구역내 도로를 남쪽으로 약 50m 이동하고자 하니 이에 맞춰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도로를 남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도로이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도로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572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외 571명
- 피신청인 : 서울 송파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주요내용

- ○○택지개발사업구역내 도로를 남쪽으로 이동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정비사업 추진의 타당성
- 각 구역내 도로계획의 변경에 대한 실현 가능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하여는 도로 선형 변경 필요
- (송파구청장) 정비사업지구내 도로계획 변경은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도로계획 변경 곤란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민원해결을 위한 도로 이동 범위 완화 및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계획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2회)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도로를 남쪽으로 약 20m 이동하고, 이에 따른 수익용 필지의 면적감소가 없는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변경절차 진행
- (송파구청장)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비사업 도로를 남쪽으로 약 35m 이동하고, 이에 따른 □□정비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변경절차를 진행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곤란은 ○○택지개발사업의 도로망 효율성에도 문제	• 도로계획의 변경으로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정상추진 도모

2) 시사점

- 도로계획이 양 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이 정상추진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도로이용을 담보하기 어려움
- 사업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계획변경을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정상추진 도모

28.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민원번호 : 2BA-1501-033269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1리와 궁평리 마을은 국도21호선 상의 과선교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으나, 2008년 장항선 선형개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설물로 존치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선교를 철거하고 국도를 평면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 조정·중재

* 다수인민원(506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문00 외 505명
- 피신청인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관련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청남도 예산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장항선 선형개량 사업으로 철도노선이 변경되어 철로의 기능이 상실된 과선교가 존치되고 있어 생활권 단절과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으니, 과선교를 철거한 후 국도를 평면교차로로 개선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과선교로 인해 25년여 기간 동안 마을의 생활권이 단절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고, 과선교의 경사가 심하여 매년 교통사고 빈발하고 있는 위험지역
- 이 민원 과선교 구간의 경사도 등은 현행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과선교의 철거와 평면교차로 설치 명분과 필요성 불분명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단절과 교통사고 빈발 등을 감안할 때 과선교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의 변경이 필요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국도21호선 과선교 구간은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과선교 철거시 평면교차로 신설로 국도의 간선기능 저해 및 투자 비용대비 사업효과 불분명하여 현재 도로 상태로 존치함이 타당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선교 철거 및 도로 평면구조 개선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 필요
- (예산군수) 현2008년에 장항선 선형개량이 완료되어 현재는 과선교가 불필요한 시설물 이고 주변경관 침해, 주민생활불편, 교통사고예방 등을 고려할 때 철거가 타당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선교 철거 및 도로 평면구조 개선에 따른 철도부지 재산관리 이전 등의 협조가 가능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국도 21호선의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14. 12월~'15. 1월까지 4차례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한 합의·중재(안)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국도21호선 구간 중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궁평리 소재 과선교 철거를 위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추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 (예산군수) 과선교 철거 및 도로 평면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용역비의 50%를 부담 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용역을 공동 관리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시 재산관리 이전 등에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간양1리와 궁평리 마을의 25년여 간의 생활권 단절 • 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 교통안전 위협	• 생활권 단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 • 도로구조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계기 마련

2) 시사점

- 과선교를 철거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주민들의 25년여 간의 숙원인 간양1리와 궁평리 마을의 생활권 단절로 인해 겪어 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단초 마련

예산 애물단지 고가 철거된다



[앵커멘트]

종전 장항선이 교차하던 충남 예산 국도에
놓여진 입체교차로가 선로 이설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들이 생활권 단절과 사고
위험으로 불편이 컸는 데요.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김건교기자

[기자]

충남 예산의 국도 21호선.

과거 장항선 교차 통과에 따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1년 길이 1.1킬로미터의 고가 굴다리가 놓였습니다.

2008년 장항선 선로 이설로 입체교차로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 불편만 키워왔습니다.

▶ 스탠딩 : 김건교 / 기자

- "고다 내리막길 끝 지점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다수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지만 제동거리가 짧아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가 설치이후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가 된 횡단보도에서 한해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마을 생활권도 쪼개졌습니다

▶ 인터뷰 : 김진섭 / 예산읍 궁평리 개발위원장

- "과선교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분리돼 있거든요. 또 공동체 생활권인 데 그 것 때문에 횡단보도 이용하는 데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가 철거에 100억원이 넘게 들어 그동안 투자효율성이 민원 해결의 관건이 돼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조정을 통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이성보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은 철도가 없어져서 필요성이 없어진 마당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군이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용역 조사비 일부를 부담하고, 관할 국토관리청이
용역 결과를 수용기로 합의한 겁니다.

애물단지 고가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에 떨던 주민들의 숙원이 25년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권익위, 예산군 창소육교 철거·도로구조 개선 중재

500여 주민들 25년간 마을 생활권 단절 등 불편 겪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정보)가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 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간양1리와 궁평리 주민 500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 21호선 과선교 구간은 1991년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일원 국도 21호선과 장항선 철도가 맞닿은 지점에 입체교차로 개념의 과선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2008년 온양온천-신례원 구간의 장항선 선형개량 공사가 완료되면서 과선교 하부에 설치된 철로를 철거해 더 이상 입체교차로서의 역할이 없어지자 과선교 철거와 도로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가 도로규정에 적합하고, 철거 시 교차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소요, 도로시설기준 부적합, 간선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지난 5일 민원접수후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3일 오후 2시 예산군청에서 주민들과 윤왕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황선봉 예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국민권익위원회 이정보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창소육교(과선교) 설치로 인해 이웃 마을간 생활권이 단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예산군 간양1리와 궁평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 철거를 위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에 재산관리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군은 과선교 철거 및 도로 평면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예산 =한내국 기자 hnk777@naver.com

29. 청평도시계획도로와 국도46호선 연결 요구

민원번호 : 2BA-1312-337019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497-1 일원에 설치된 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6, 폭 12m, 길이 1.65km)는 관계인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도로를 개설하여 전 구간의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으나, 국도46호선 접속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청평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원거리를 우회하고 있으니,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평도시계획도로와 국도46호선을 조속히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 조정·중재

*기업민원, 다수인민원(1,296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00 외 1,295명
- 피신청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가평군수
- 관련기관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2) 민원주요내용

-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6)를 주민과 호명산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도46호선과 연결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도로 이용의 편리성
- 이 민원 도로 연결에 따른 청평검문소 교차로의 안정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조속한 연결 필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감속차로 없이 청평도시계획도로를 국도46호선과 연결하는 것은 곤란

- (가평군수) 청평도시계획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었고, 접속구간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조속히 국도 46호선과 연결 필요
- (00건설주식회사) 현재 청평도시계획도로가 완공단계에 있으나, 가·감속차로 설치 문제로 국도46호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바, 접속구간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기업민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청평검문소 교차로의 안정성 확보 및 주민 교통편의 도모 등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14. 4. 2, 9. 4. 외 4차례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청평도시계획도로와 국도46호선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주민들이 청평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 00건설주식회사가 호명산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 고충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00건설주식회사가 감속차로 설치와 가각정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도교 설치 계획을 제출할 경우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
- (가평군수) 2016. 6.까지 교차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청평검문소 교차로 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청평도시계획도로에서 국도46호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속차로 부지 확보
- (00건설주식회사) 2016. 6.까지 청평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는 조종교의 폭을 확장하여 감속차로 50m 설치하고, 가속차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가각 정리하며, 청평검문소 교차로 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조종교에 보도교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100억을 들여 설치한 도로 사용 불가 •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호명산 유원지 개발 불가	• 도시계획도로 이용 가능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 • 청평검문소 교차로 안전성 증대 • 호명산 유원지 개발로 지역 소득 향상 • 기업고충 해결 및 고용 증대

2) 시사점

- 약 1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민원이 해결
- 국도와 도시계획도로의 연결로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하는 계기 마련

4년 중단된 청평 도시계획도로 공사 권익위 중재로 재개

4년 중단된 청평 도시계획도로 공사 권익위 중재로 재개



청평 도시계획도로 공사 권익위 중재로 재개 (가평=연합뉴스) 경기도 가평군 청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30일 청평면사무소에서 이성보(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성기(왼쪽두번째) 가평군수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사 재개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30 <<국민권익위 제공>>
kyoon@yna.co.kr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 청평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4년 만에 재개된다.

국도 46호선과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1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도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갈등을 중재했다.

청평 도시계획도로는 폭 12m, 길이 1천650m 규모로 설계돼 1993년 공사가 시작됐다.

A건설사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도중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국도 46호선과 연결하는 조건으로 가·감속 차선 설치를 요구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도 46호선에 있는 조종교를 확장해야 하는 등 공사 비용 20억원이 추가로 들자 A건설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청평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100억원이나 투입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쭉 뻗은 도로 대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과 인근 호명산 관광객의 불만이 쌓였다.

급기야 주민과 호명산의 한 사찰 주지 등 1천300명이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 안을 마련했고 30일 관계기관이 합의했다.

A건설사는 2016년 6월까지 조종교 폭을 확장, 감속차로 50m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가속차로를 설치할 땅을 확보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추가 공사 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끝)

권익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국도46호선' 연결 중재

100억 원 들어간 가평도시계획도로 무용지물 될 뻔



[경기방송=엄인용기자]국도46호선과의 연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평도시계획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는 폭 12m, 길이 1천650m의 규모로 1993년 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삼호건설(주)이 당초 2011년을 완공 목표로 해 그동안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도46호선과의 연결조건으로 가감속 차선 등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여 국도46호선에 있는 조종교(길이 약 170m, 폭 약 23m)를 확장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삼호건설(주)이 이를 거부해 지금까지 표류해 왔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그간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성보 위원장, 주민대표, 안충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이효근 삼호건설(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권익위의 조정내용에 따르면, ▲ 삼호건설(주)은 2016년 6월까지 청평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는 조종교의 폭을 확장해 감속차로(보도포함) 50m를 설치하고, 가속차로는 현 상황을 고려해 가각을 정리하기로 하며, 청평검문소 교차로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평검문소 구간에 대한 교차로 개선사업이 확정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종교(가평방면)에 보도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엄인용 umiy@naver.com 수도권에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30. 폐철도 교량 철거

민원번호 : 2BA-1404-165814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중앙선 양동~판대 구간 중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486-2에 위치한 철도교량 철거와 그 하부 도로 및 소하천 개량 요구 민원 조정·중재

* 주민 숙원, 다수인민원(199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00 외 양평 주민 198명
- 피신청인 : 경기도 양평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중앙선 양동~판대 구간 중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486-2에 위치한 철도교량 철거와 그 하부 도로 및 소하천 개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폐철도 교량 존치 필요성
- 폐철도 교량 철거 주체 및 비용 부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폐철도 교량으로 농지로의 진출입이 곤란하였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위 교량을 철거하고, 그 하부 도로를 개선하며, 구거를 정비해 달라
- (양평군수)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폐철도 교량 철거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교량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철거는 곤란

2) 민원특성 : 주민 숙원 및 다수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양평군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14. 4. 14, 5. 22. : 각 고충민원 접수
- '14. 4. 28.~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 검토
- '14. 7. 10, '15. 2. 13. 외 4차례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양평군수) 양동면 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이 민원 교량을 철거하고, 이 민원 교량 하부 도로 및 구거를 개량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민원 교량 철거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농지로 진출입 곤란 • 우기시 도로 침수 피해 발생 • 농업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 발생	• 농지로 진출입로 용이 • 도로 및 구거 정비로 도로 침수 예방 • 적재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아 농업 생산활동에 도움 • 마을 발전 기대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신청인 이해 설득을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결
- 도로 및 구거 정비와 폐철도 교량 철거로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와 농업생산활동에 도움
- 적극적인 주민 고충민원 해결로 위원회 이미지 제고



양평군, 양동면 삼산3리 폐철도 교량, 역사속으로“안녕”

0

BY 경기 미디어 리포트 ON 2016년 1월 12일

양평뉴스

<경기미디어리포트 뉴스>



-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 해소 기여

양평군이 양동면 삼산3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던 폐철도 교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교량은 삼산리 486-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콘크리트식 교량으로 지난 1942년 설치돼 2011년까지 철도 교량으로 사용했으나, 비좁고 낮은 하부공간으로 인해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는 등의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량이다.

철도 미운행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2011년도부터는 흉물로 방치된 채 유지되어 주민 불편이 더욱 심화됐으나, 지난 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중재(양평군, 한국철도시설공단)로 교량 철거가 확정됐다.

양평군은 교량 철거가 확정된 후 철거 비용을 산출해 2015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거 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A씨는 “마을의 오랜 불편사항이던 폐교량이 철거돼 속이 후련하다.”며, “다가올 농번기에는 트랙터나 농기계가 통행이 가능하게 돼 이전보다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누구나 살고싶은 양평의 시작은 군민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교량 철거에 그치지 않고, 기존 하부도로와 인접한 소하천 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cnn0428@daum.net

<저작권자 © 미디어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1. 폐선부지 사용허가면적 조정 및 사용료 감면

민원번호 : 2CA-1405-269183 (교통도로민원과)

<민원개요>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한 중앙선 양동~동화 폐선구간(길이 약 12.7km, 총 면적368,586㎡) 중, 사유지가 포함되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없는 양동~판대구간(길이 3.1km, 이 민원 구간1)과 강원도 원주시장이 2014. 4. 2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구간에 포함되어 사용허가(레일바이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간현~동화구간(길이 3.1km, 이 민원 구간3)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 민원 구간1과 2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며, 판대~간현 구간(길이 6.5km, 이 민원 구간2)은 2014. 5. 3.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아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실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새로 조성한 판대역 승강장 조성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조정·중재

* 기업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레저산업 대표 이○○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한 중앙선(양동~동화) 폐선 구간 중 양동~판대 구간과 간현~동화 구간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며, 판대~간현 구간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한 2014. 5. 3.부터 사용료 징수 및 판대역 승강장 조성비용 지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와 원인 및 그 책임 소재
- 사용면적 축소 및 사용료 감면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득한 폐선부지에 대해 면적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유지 사용허가 입찰공고 및 사용허가서 등에 따라 레일바이크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허가면적 조정 및 사용료 감면 등은 불가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양평군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14. 4. 14, 5. 22. : 각 고충민원 접수
- '14. 4. 28.~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 검토
- '14. 7. 10, '15. 2. 13. 외 4차례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유지가 포함되어 철도부지 및 철도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고, 향후 교량 철거로 철도시설물(레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국유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2014. 4. 2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로 레일바이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구간을 국유지(철도부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2014. 4. 25.) 이후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 (신청인) 위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2013. 3. 25.부터의 사용료를 납부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기업활동 곤란 • 국유재산 관리 곤란 • 폐철도 관련 민원 발생	• 레일바이크 사업 정산 추진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 활동에 도움 • 합리적인 국유재산 및 폐철도 부지 관리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신청인 이해 설득을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결
- 사용불가한 폐철도 구간에 대해 사용면적에 제외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도움
- 적극적인 기업 고충민원 해결로 위원회 이미지 제고

권익위, 양평군 폐철도 복선사업구간 갈등민원 현장 해결

폐철도 교량 철거 및 레일바이크 사업구간·부지사용료 조정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2.26 09:41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양평군 중앙선 복선사업구간 갈등민원을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폐선이 된 양평군 양동~동화구간(12.7km)에 있는 노후 철도 교량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199명)과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국유지 사용허가 구간 등을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철거를 요구하는 철도 교량은 중앙선 양동~판대구간(3.1km)인 양동면 양동면 삼산리 486-2에 위치한 콘크리트식 교량으로 1942년에 설치된 노후 교량이다.

높이 3.0m에 길이 6.0m의 비좁은 이 교량은 도로바닥도 움푹 들어가 있어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우기 시에는 아예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이 수십 년 간 불편을 겪어 왔다.



▲국유지(폐철도 부지) 사용허가 및 조정요구 현황도



▲ 폐철도 교량 및 하부도로 등 현황사진

주민들은 중앙선 복선사업으로 철도가 폐선이 되자 2012년 말부터 교량 철거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3월 이 교량이 포함된 폐선구간을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저산업에게 레일바이크 사업목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해 주어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사용허가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교량 철거와 하부의 도로·소하천 정비는 양평군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하자, 주민들은 2014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을 받은 후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대안마련 등의 해결노력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25일 오후 2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와 이수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김선교 양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이끌어낸 해결방안에 따르면 양평군수는, ▲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폐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 교량하부의 도로와 소하천을 개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 양평군의 교량 철거 요청을 허가하고, ▲ 사유지가 포함되어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양동~판대구간은 국유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 도시계획시설(레도) 변경 불가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없는 간현~동화구간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원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2014년 4월 25일 이후의 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저산업은 판대~간현구간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는 2013년 3월 25일 분부터 계속 납부하고, 간현~동화구간은 같은 날부터 2014년 4월 25일 분까지만 납부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si@m-i.kr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2. 태안국도 3개 교차로 구조개선 요구

민원번호 : 2BA-1501-013937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국도77호선 태안 - 원청 국도건설 구간은 태안 국립공원 주변 관광지와 마을이 산재되어 있으나 현행 설계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불편하니 '신장교차로, 남산교차로, 송암2교차로 등 3개 교차로를 당초 설계대로 좌회전이 가능 하도록 변경 시공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교차로의 구조 개선으로 태안지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편의에 도모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908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충남 태안군 주민 908명
- 피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관련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마을 및 주변 관광지 진입 교차로 개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교차로 개선 요구 민원의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당초 설계대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요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전후 교차로와의 간격을 고려하여 당초 교차로 계획을 보완 설계하여 단순접속시설로 변경·결정한 사안으로 민원 수용이 곤란한 입장
- (태안군수)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과 인접 마을 주민의 원활한 접속과 교통 편의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교차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교차로 시설개량이 요구된다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회)
- 태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요구
- 지역주민은 마을 진입 구조 개선으로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피신청인의 이해·설득 협업

5. 조정 결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신장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설계변경을 검토
- (태안군수) 이 민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태안국립공원 관광객 접근 불편으로 지역 발전 저해 및 마을 진입 불편으로 민원 발생	• 태안 국립공원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 및 마을 진입 불편해소로 주민 만족

2) 시사점

-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도로구조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모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

태안 관광지 진입 도로 좌회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잇단 민원으로 인한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협의안 성사
국도 77호선(태안~원정) 구간 몽산포 해수욕장 등 교차로 구조 개선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18일 오후 태안군청에서 국도77호선 구간 중 몽산포 해수욕장 등에 대한 진입교차로를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태안 관광지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돼 1km를 더 지나 유턴해서 진입해야했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된다.

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국도 77호선(태안~원정) 건설 공사 구간에서 몽산포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및 마을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며 총 90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인 국도 77호선 태안~원정 구간은 태안국립공원을 잇는 실제 관광도로이며 주변에는 몽

산포 해수욕장, 수목원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요양병원, 마을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태안~원정 구간에서 관광지로 진입하는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 모두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차로로부터 약 1km를 더 지나 다음 교차로

에서 유턴해 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겼으며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권익위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도로사업 시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2008년) 결과를 토대로 앞뒤 교차로와의 간격을 고려해 당초 교차로 계획을 보완 설계 후 단순 접속시설로 변경·결정된 사안으로 민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19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장, 남산, 송암2 교차로에 대해 양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태안군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기를 유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태안/신현교 기자 skk1144@daeyoung.net

충청투데이

2015년 03월 19일 (목)
19면 지역

국도 77호선 개선... 주민 불편사항 받아들인다

〈태안·원정간〉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소
태안군수 행정지원 약속

국도 77호선(태안~원정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된다.

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성사시켜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했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국도 77호선 건설 공사 구간 중 몽산포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및 마을로 좌회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됐던 태안~원정 구간은 관광지로 진입하는 3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돼 1km를 더 지나 유턴 하도록 설계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겼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권익위에 호소해 왔다.

권익위는 이날 협의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장, 남산, 송암2 교차로에 대해 양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태안군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기를 유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게 됐다”며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인 국도 77호선 태안~원정 구간은 태안국립공원을 잇는 실제 관광도로이며 주변에는 몽산포 해수욕장, 수목원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요양병원, 마을 등이 산재해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2000@ctoday.co.kr

국민권익위, 태안-원청 국도 좌회전 민원 중재

국민권익위원회가
태안-원청간 국도 77호선 공사 구간의
교차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며
905명이 제기한 민원을
현장에서 중재했습니다.

몽산포해수욕장 등 관광지의 진입로인
태안-원청 4차선 확장 구간은
3개 교차로의 양방향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주석 기자

국민일보

2015년 03월 18일 (수)
사회

권익위 현장서, 태안 관광지 진입교차로 민원 해결

[쿠기뉴스=송병기 기자] 충남 태안 관광지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돼 1km를 더 지나 유턴해서 진입해야 했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도 77호선(태안~원청) 건설 공사 구간에서 몽산포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및 마을로 좌회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며 총 90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인 국도 77호선 태안~원청 구간은 태안국립공원을 잇는 실제 관광도로이며, 주변에는 몽산포 해수욕장, 수목원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요양병원, 마을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태안~원청 구간에서 관광지로 진입하는 3개 교차로(신장, 남산, 송암2) 모두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차로로부터 약 1km를 더 지나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해 진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겼으며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권익위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8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뒤 교차로와의 간격을 고려해 당초 교차로 계획을 보완 설계 후, 단순 접속시설로 변경km결정된 사안으로 민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18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에 성공했다.

권익위는 이날 중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장, 남산, 송암2 교차로에 대해 양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태안군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3. 국도23호선 ○○마을 교통사고 예방요구

민원번호 : 2BA-1502-195176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국도23호선 강진 - 마령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을 중앙부를 통과하는 국도의 과속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니 기존 국도를 폐쇄하고 마을을 벗어나 해안 또는 산지부의 터널 등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도로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전남 강진군 주민 289명
- 피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련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마을통과 국도의 교통사고 빈발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개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우회도로 개설의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교통사고 빈발 해소 대책을 위해 마을 우회도로개설 요구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회도로 개설시 교통안전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농지 잠식 및 다수의 가옥편입 등에 따른 상대민원이 예상되며 과도한 사업비 투자로 인한 경제성 상실 등으로 우회도로개설은 곤란한 입장
- (강진군수) ○○마을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을을 우회하거나 서행 등을 위한 안전시설 보완 등 도로 시설 개량이 필요

2) 민원특성 :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회)
- 마을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
- 과속 단속차량 설치 및 안전 시설물 보완등으로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기관 협업,

5. 조정 결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차량 서행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신호등 설치 및 속도와 신호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장래 교통량 증가로 민원 구간이 4차선으로 국도 확장계획이 확정될 경우 민원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대체노선 개설을 검토·처리
- (강진군)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즉시 시설 인계를 받고, 원활한 민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 (강진경찰서)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운영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 빈발로 안전 위협으로 민원 발생	• 과속예방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기여 • 사고 저감 대책에 마을 주민 만족

2) 시사점

-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 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민원 해소에 기여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익산국토청, 강진군 등 관계자는 강진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익산국토청 제공

권익위 중재로 강진 하저마을 앞 도로 민원 해결

익산청 등 최종 합의안 서명

강진군 하저마을 앞 도로가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우회도로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7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인수)와 익산국토청(청장 권석창), 강진군(군수 강진원), 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 주민대표 등은 강진군청에서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강진군 하저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월부터 “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를 폐쇄하고,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청은 강진-마량 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의 갓길 확장 등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400억원의 터널 건설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해안도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 오염 등으로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민 280여 명은 지난 2월 권익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개선을 해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진행해 양측 입장을 조정해 왔으며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익산국토청은 사고방지를 위한 보·차도 경계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신호등 및 과속방지용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를 해당도로의 양방향 2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교통량 증가로 4차선 국도 확장계획이 확정될 경우 하저마을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대체노선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권석창 익산국토청장은 “권익위 중재안을 성실히 이행해 이 도로가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kipark@jinilbo.com

기념 촬영하는 김인수 사무처장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전남 강진군청에서 하저마을을 통과하는 국도23호선의 도로 개선 집단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4.0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권익위, 강진 하저마을 교통사고 예방 대책 현장조정

권익위, 강진 하저마을 교통사고 예방 대책 현장조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남 강진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전남 강진군 하저마을을 지나는 도로에 경계 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장과 강진군 주민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또 신호등과 과속방지용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교통량이 늘어 4차선 국도 확장 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체 도로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강진군 주민들은 하저마을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우회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회도로를 만들 경우 약 400억원의 터널 건설비용이 소요되고, 해양 생태계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34.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차로 신설

민원번호 : 2AA-1412-210663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27호선 장신~송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익산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 등의 통학안전과 65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엘리베이터형 육교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조정·중재

*다수인민원(1,103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권00 외 1,102명
- 피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련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장,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장,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민원주요내용

- 전북 익산시 송학동 더샵아파트 650여 세대 주민들이 국도27호선 확장으로 통학 및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교통안전 대책의 마련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성토부를 교량으로 변경해야하는 타당성 및 합리성
- 주민 요구 수용없이 적기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익산 ○○아파트 650여 세대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육교 설치는 시간당 6천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에 교통·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하나, 동지역은 시간당 통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육교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육교설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하며, 육교가 설치될 경우 인도면적 축소와 무단횡단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될 우려

- (익산시장) 육교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 등의 상대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내에 기 설치된 육교도 철거되는 추세에 있어 동 지역의 육교 설치는 부적합
- (익산경찰서장) 국도27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더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출입 차량에 대한 진출입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2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시설을 배치하는 평면교차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파트 통학구역을 ○○초등학교로 단독 조정할 예정에 있어 현재의 통학생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학생을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안전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개선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2014. 12. - 2015. 2. 현지조사 및 출석조사 (4회)
- 2015. 3. - 2015. 4. 관계기관 및 신청인 대표와 협의 (5회)
- 평면교차로 신설, 교통안전시설(다기능단속카메라, 교통섬, 조명등 등) 설치, 도로 경사도 조정(약 60cm 낮춤) 등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교차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 조명등, 신호등, 다기능 단속카메라, 교통섬 등)을 설치하며, 인근 장신지구 아파트시설물 등을 감안하여 계획도로의 종단 경사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설계변경
- (익산시장) 교차로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공사 준공 후 관리전환 받아 교통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
- (익산경찰서장) 교차로 설치에 따른 업무 협의 시 보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파트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계도와 등·하교시 학생 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 활동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 지도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아파트 단지 앞에 횡단보도 등이 없어 장거리 통학로 불편 • 급경사로 인해 매년 수차례 교통사고 발생 •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공사업 지연	• 평면교차로 신설 • 도로경사 조정(약 60cm) •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 • 원활한 공사 시행으로 적기 준공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신청인 이해 설득을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결
- 익산 더샵아파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되어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 될 수 있는 단초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어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

권익위, **익산**더샵아파트 집단민원 중재 해결방안 마련



【**익산=뉴스시스**】강명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익산**더샵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16일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민들은 현재 왕복 4차선인 국도27호선이 경사가 심하고 과속차량이 많아 매년 4회~5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또 올해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왕복 8차로로 확장돼 500m 가량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엘리베이터형 육교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익산국토청은 이에 대해 해당지역은 육교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예산확보가 어렵고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면적이 축소되고 무단횡단이 증가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16일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권석창 익산국토청장, 박경철 익산시장, 강황수 익산경찰서장,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로 익산국토청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과 아파트 차량 진출입을 위한 평면교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는 교차로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익산경찰서는 교차로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시 보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속방지형 다기능 단속카메라도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영만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계도하고, 등·하교 시 교통봉사 활동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은 가정교육과 아파트 방송망 등을 통해 무단횡단 등을 못하도록 안내하고, 국도27호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준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며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smister@newsis.com

35. 비영리단체 노상주차장 주차료 할인

민원번호 : 2BA-1501-086715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외곽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다수인이 이용할 경우 50%씩 할인해 주다가 피신청인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정상 요금을 징수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에서 주차비를 더 부담해야 하니 종전처럼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일요일에 한해 비영리단체(시설)를 이용한다는 증표가 있는 차량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90분에 한해 주차료의 30%를 할인해 주도록 조정·중재

*기업민원, 다수인민원(262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외 261명
- 피신청인 : 서울 송파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비영리단체에 대해 주말에 노상주차장 할인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비영리단체에서 단체 행사시 주차요금 조정 필요성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종전에는 노상주차장을 다수인이 이용할 경우 할인해 주다가 피신청인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정상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
- (송파구청장) 송파구 관내 비영리단체(시설)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조례상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5.1.16. 고충민원 접수 후 설명자료 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5회)
- 3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공휴일에 비영리단체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에 복지혜택 부여할 수 있도록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일요일에 한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하는 증표가 확인된 차량이 노상주차장 이용시 최초 90분(조례 인정시간)에 한해 주차료 30% 할인
- 시행일자 공지(통보)한 날부터 비영리단체를 이용한다는 증표(확인)를 회원 차량에 배부(확인)해 주어야 함
- 비영리단체 증표(확인)를 부착(제시) 하지 않은 차량은 할인율 미적용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노상주차장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 적용으로 비영리단체 행사 시 주차요금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발생 • 지역발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61명의 민원 및 기업의 고충 발생	• 현장조정을 통한 근거 마련으로,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혜택 확산 가능 • 향후 이용자 많을 경우, 공영주차장까지 확대(예정)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비영리단체의 집단 행사 개최 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

권익위, 송파구 비영리단체 노상주차장 이용료 할인토록 중재

문화·복지·종교단체 등 이용 증표 있으면 일요일에 한해 90분까지 할인

백수현 shilbo@naver.com

백수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정보)는 24일 오전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가 노상주차장 이용 시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는 방이동 주민 26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인근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다수인이 이용하게 되면 50%씩 할인해 줬다.

그러나 2015년부터 송파구로 관리권이 이관 되면서 정상 요금(2시간당 3천원→6천원)이 징수되자 주차비가 부담된다는 주민 262명이 노상주차료를 재조정 해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파구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상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올해 1월 16일 민원 접수 후 수차례 실무협약과 현장 조사를 거쳐 4월 24일 오전 11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김영수 송파구 부구청장, 이배철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송파구는 일요일에 한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증표(표시)가 확인될 경우 최초 90분까지 주차료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사무처장은 "오늘 조정으로, 비영리단체(문화, 체육, 종교, 사회복지등)에서 송파구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6. 국도23호선 덕제교차로 개선 요구

민원번호 : 2BA-1501-287417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23호선(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마을 진출입로 주변은 잦은 안개와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다발 지역으로 현재 설계된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 도로가 개설될 경우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입체교차로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 조정

* 주민숙원, 안전, 다수인민원(1,093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1,092명
- 피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련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수

2) 민원주요내용

- 국도23호선(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덕제교차로 주변은 잦은 안개와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다발지역으로 현재 설계된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입체교차로로 변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국도23호선은 왕복2차로로, 도로선형 불량으로 매년 5~6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2017년까지 도로선형 개량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덕제교차로는 현재의 도로 높이보다 최대 11m이상 높게 성토되는 오르막 경사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
- 국도Ⅳ등급 도로는 평면교차가 원칙이며, 지역여건과 도로의 기하구조(교량 인접 지역)상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평면교차 방식이 최선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보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덕제마을 진출입로 주변은 잦은 안개와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다발지역으로 현재 설계된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입체교차로로의 변경이 필요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Ⅳ등급 도로는 평면교차로가 원칙이며, 지역여건과 도로구조상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평면교차 방식이 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보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예방이 가능하여 입체교차로 설치의 불가
- (장흥군수) 2005년부터 총 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평면교차로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체교차로로 변경이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 주민숙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국도23호선의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덕제교차로 구간을 입체교차로로의 변경 등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15. 1~4월까지 6차례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국도23호선 덕제교차로의 입체교차로로의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 덕제교차로의 입체교차로로의 변경 등을 위한 합의·중재(안)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23호선 용산~장흥간 공사 구간 중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덕제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재실시(용역 시 주민의견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타당성검토용역 추진시 주민의견수렴과 용역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국도23호선 공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로 설계·시공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덕제교차로를 설계·시공

2) 시사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남 장흥군 덕제·평장마을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장기 표류하던 공공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뉴스9] '평면 대신 입체교차로'...**권익위** 현장 조정

박익원 기자 <앵커멘트>
장흥읍 덕제삼거리
두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나는
사고다발지역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선형개량을 하면서도
평면교차로를 유지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익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흥읍 덕제리와
평장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제삼거리교차로...

내리막 굽은 길에
바로 교차로가 나타나
두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김정자 장흥읍 덕제리>
여기오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저것(반사경)보고 다녀도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급하고 이쪽에서 차가
저것 보고 있다가 쿵 달라 들 수도 있고

이지역 주민 천9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천17년까지 선형개량을 하면서도
내부 설계지침을 이유로
평면교차로를 유지하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은
새로 만드는 도로가
직선도로라고는 하지만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집단 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예 나섰습니다.

〈백승수 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장〉
4-5도 가량 비탈길이 경사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10미터정도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6도 정도 경사로
올라와가지고 평면이 되게 되면은
이지역에서 출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조정회의에서는
입체 교차로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인
장흥 덕제 교차로
안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익원입니다.

전남 장흥 덕제교차로 개량공사 타당성 용역 재실시

전남 장흥 덕제교차로 개량공사 타당성 용역 재실시



권익위 민원현장 방문 (장흥=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사진 오른쪽)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전남 장흥군 덕제교차로 인근 민원현장을 방문해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5.5.12 <<장흥군>> kjsun@yna.co.kr

권익위, 안전대책 요구 집단민원 현장 조정

(장흥=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평면교차로로 설계돼 주민 민원이 제기된 국도23호선 전남 장흥-용산 구간 덕제교차로에 대해 교통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전남 장흥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덕제교차로 안전에 대한 주민 집단민원 중재 방안을 마련했다.

국도23호선 용산-장흥 간 공사 구간 중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덕제교차로에 대해 교통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왕복2차로인 이 도로 구간은 굴곡이 심해 매년 5~6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 터널 설치 등 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도로선형 개량공사로 터널 등이 설치되면 현재보다 도로가 높아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더 커진다고 평면교차로인 덕제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등급(국도Ⅳ) 상 평면교차로 설치가 원칙이며, 지역 여건과 도로구조를 볼 때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덕제-평장마을 주민 1천92명은 이에따라 덕제교차로에 관한 집단민원을 지난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장흥군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장흥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kjsun@yna.co.kr
(끝)

37.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정상화

민원번호 : 2BA-1407-318426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에 현재 20여 개 업체가 입주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지 진입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니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주고, 도로개설 시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 달라는 민원 조정·중재

* 기업민원, 다수인민원(353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인천북항배후단지협의회 대표 남00 외 352명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항만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주고, 도로개설 시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시 주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진입도로 정상화 필요
- (인천광역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단지조성사업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
- (서구청장)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나, 현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구역내 적치물은 도로의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아 관리하기 곤란

- (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진입도로를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진입도로 개설의무가 없고, 불법 적치물이나 주정차 단속은 공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곤란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14. 10. 30. : 실지조사
- '15. 5. 6. : 출석조사
- '15. 5. 10. ~ 5. 28. : 관계기관 업무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인천광역시) 2016. 상반기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16. 하반기까지 진입도로의 개설공사 착공하며, 2017년 하반기까지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신청인이 입주해 있는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까지의 진입도로(길이 420m, 임시도로 포함) 우선 개설
- (서구청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전까지 진입도로 부지의 사용허가와 지장물 등에 대해 정리하고, 2015년 말까지 도로변 폐기물 처리
- (인천항만공사) 진입도로(전체 850m 구간) 개설에 필요한 비용 중 25억원을 부담하고, 2015. 12.말까지 인천광역시에 25억원 지급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출입 곤란 • 도로부지에 쌓인 각종 쓰레기로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이미지 추락 •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 발생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출입 용이 • 도로 주변환경 개선으로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이미지 향상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버스노선 신설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신청인 이해 설득을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결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됨
- 적극적인 기업고충민원 해결로 위원회 이미지 제고

인천북항 배후단지 진입로 내년 개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가 오는 2017년 본격 개설된다.

5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인천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서구청, 인천항만공사의 중재에 나서 최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해 2017년 하반기까지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신청인이 입주해 있는 항만배후

단지까지의 길이 420m 도로(임시도로 포함)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전까지 진입도로 부지 사용을 허가하고 올해 말까지 진입도로 주변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진입도로 전체 850m 구간 개설에 필요한 비용 중 25억원을 부담하고 올해 말까지 인천시에 2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진입도로가 정상 개설되면 북항 배후단지를 오가는 트럭들이 멀리 돌아다니지 않게 돼 교통불편이 해소 되고 주위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00@fnnews.com

“인천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2017년까지 개설해야”

행정당국과 입주 업체들 간에 갈등을 빚어왔던 인천 북항 배후단지의 새 진입도로가 2017년쯤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북항 배후단지협의회가 제기한 진입도로 개설 분쟁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에는 올해 말까지 25억 원의 건설비용을 마련하고, 인천시에는 늦어도 2017년 하반기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라는 중재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북항 배후단지협의회 회원 350여 명은 당초 조성 계획과 달리 진입도로가 조성되지 않아 물류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임재성기자 (newsism@kbs.co.kr)

38. 진해 ○○마을 이주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411-286451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 - 녹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등으로 마을이 고립되고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 피해로 계속 거주가 곤란하니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도로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환경민원, 안전민원, 다수인민원(85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경남 창원시 ○○마을 주민 85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창원시장

2) 민원주요내용

- 2개의 신설도로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소음등 환경피해로 인해 마을 이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도로개설로 인한 마을 이주의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2개의 신설도로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소음등 환경피해로 인해 마을 이주 요구
- (한국도로공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죽향마을의 주택과 제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소재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으로 볼 수 없기에 민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죽향마을의 환경피해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 사업으로 발생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

2) 민원특성 : 환경·안전·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등 조정·중재안 도출
- 불합리한 고속도로 진입로 설계변경으로 마을 편입 구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기관 협업,

5.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 부산신항 제2배후 도로와 소사-녹산 도로가 접속되는 진해I/C 연결로의 종단경사(7.5%)를 보완하기 위해 저속차량 주행을 위한 추가 차로 설치 2) 고성토의 비탈면 경사 완화 및 부체 도로를 연장하도록 설계변경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변경 승인 및 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마을 소재 가옥 등 편입과 관련된 보상 추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소사 - 녹산간 도로와 접해 건설중인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
- (창원시장) 원활한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2개의 대형 국책사업인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로 인해 열악해진 마을 환경 피해 발생으로 민원 발생	• 합리적인 도로구조 개선으로 마을집단 이주가 가능하고 장기 민원 해소로 마을 주민 대 만족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업으로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
- 합리적인 도로구조를 개선으로 민원해소는 물론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진해 죽항마을 주민 민원 해결됐다...권익위 중재

강재성 죽항마을 주민대표, “김성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구제 현장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책사업(도로공사)으로 마을이 고립돼, 생활불편을 호소해 오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죽항마을 주민들이 이주하게 됐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도로공사로 말미암은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다니며 진해 죽항마을 주민들의 생활실상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김성찬 의원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죽항마을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고립된 채, 소음·비산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원 적그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이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등 정부기관, 지자체와 함께 수차례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경남매일

2015년 07월 13일 (월)
03면 종합

진해 죽항마을 주민들 이주한다

도로공사 보상문제 해결
권익위 중재 협약식
김성찬 의원 설득 주효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와 ‘죽산-소사-석동’간 도로공사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온 진해 죽항마을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지난 10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최명용 해수부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허성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팽우선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죽항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협약식에서 권익위의 조정합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고 해양수산부가 주민들의 이전 보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죽항마을 주민대표인 강재성 씨는 “참담한 심정에서 시작됐고 어렵다고 여겨졌지만 1년 넘게 서울과 진해를 오가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준 김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가운데 왼쪽) 부위원장과 신용선(가운데 오른쪽)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권익위

덕분에 관계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준 김 의원에게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조정 덕분에 그동안 분진과 소음 때문에 밤낮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걱정을 덜게 돼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에게 죽항마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 이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과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죽항마을은 현재 공사 중인 부산항 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에서 불과 3~15m 거리에 있다.

마을 옆에는 또 다른 도로인 소사-녹산간 지방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마을은 원래 30여 가구가 살던 자연부락이었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한 소사-녹산간 지방도 개설공사, 해양수산부·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부산항 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공사로 일부 가옥들이 편입되면서 현재 가옥 6채(7가구)와 제1사당 1채만 남았다. 도로사업 구역에 편입되면 법적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관련 기관들도 이 방법에 동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램프 경사가 심해 차량 통행에 위험할 수 있어 저속차량용 차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방법으로 공사 구역을 넓혔다”며 “도로안전도 확보하고 주민 민원도 동시에 푸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뉴스9] 책임 떠넘기기, 주민만 고통

박상현 기자 [앵커멘트]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민원이 뒤따르는데요,
하지만, 여러기관이 얹혀
책임지고 나서는 기관이 없는 경우
주민들만 오랜시간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덤프트럭이 쉴새없이 다닙니다.

공사현장 바로 아래,
약 스무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 옆으로
고속도로와 국도가 들어서는데다,
두 도로를 잇는 연결도로가
마을 10미터 앞으로 지나가게 되자
주민들은 이주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5곳이 3년 동안 내놓은 답변은
안된다는 것.

[인터뷰]
강재성/창원시 진해구 죽향마을 주민
"시공사나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여기서 못 삽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법을 적용하면 단 한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연결도로를 넓히는 설계변경으로
마을을 보상가능지역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민들의 고통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 처리장을
옮기는 데는 5년이 걸렸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를
개발하는데는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모두 책임지며 나서는 기관이 없어
민원 해결이 늦어졌던 겁니다.

[인터뷰]
김의환/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공공기관간의 서로 여러가지 업무 소관이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소위 핑퐁민원도 많고 말이지. 정부 차원의 대책
이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관계기관이 얹혀있는 민원은
권익위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집단민원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39. 마을 앞 성토부 교량화 요구

민원번호 : 2BA-1504-340366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경주시 광명동 ○○마을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45년간 경주시내 및 인근 마을과 단절되어 개발이 되지 않는 등 많은 피해를 입어왔고,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고속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3m 더 높은 성토로 건설될 경우 이 민원 마을은 더욱 고립되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마을 발전 및 지역 간 단절 해소를 위해 이 민원 마을 앞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해 달라는 민원 조정·중재

*주민숙원, 다수인민원(1,994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00 외 1,993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관련기관 :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경주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경북 경주시 광명동 ○○마을의 발전 및 지역간 단절 해소를 위해 성토구간 STA.4+620~STA.4+820(약 200m)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성토부를 교량으로 변경해야하는 타당성 및 합리성
- 주민 요구 수용없이 적기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마을 발전 및 소통을 위해 성토부를 교량으로 변경 필요
- (한국도로공사) 현 지하통로를 확장할 예정인바, 향후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교량화를 하여도 중앙선 철도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것은 전과 동일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

- (경상북도지사) 신설되는 폭 19m 교량은 지방도904호선이 건설될 위치에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민들의 요구는 이 교량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
- (경주시장) 교량화가 되고 중앙선이 폐선되면, 현 마을 진입로를 개량할 계획이고, 폐선되는 중앙선은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철거한 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폐선 이후의 부지 활용 및 철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경주시와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

2) 민원특성 : 주민숙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이웃마을과의 단절 해소, 마을 발전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2015. 5. - 2015. 6. 현지조사 및 출석조사 (4회)
- 2015. 7. - 2015. 8. 관계기관 및 신청인 대표와 협의 (3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 STA4+620 지점에서 STA4+690 지점까지 약 70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고, 지방도904호선 이설계획에 따라 폭 19m 교량 이전설치
- (경상북도지사 및 경주시장) 지방도904호선 이설계획 조속확정(경상북도), 추가되는 폭 19m 교량 이전 설치비용 전액 부담, 현 지방도904호선 선형 개량 및 확장, 중앙선 폐철도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철거 방안 반영
-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선을 즉시 폐선 조치하고, 철거에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 진출입 불편 •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곤란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마을 낙후	• 외부와 교류 활성화 및 마을 발전 기대 • 교통 편의 증대 • 마을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 기업고충 해결 및 고용 증대 • 원활한 공사 시행으로 적기 준공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신청인 이해 설득을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결
-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적기에 준공되게 되었고, 고속도로와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고립되었던 마을이 외부와 연결되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권익위 "경부고속도로 45년 고립된 주민불편해소"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45년간 경주시내와 단절됐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광명4동 마을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광명4동 마을은 광명3동 마을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생활권이 양분됐다. 폭 8m의 지하통로만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광명4동 마을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를 횡단해야 경주시내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를 시행하자 광명4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경부고속도로 200m 구간을 교량화해 그 아래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에 통행하던 지하통로 대신 그 위치에 19m의 구간을 교량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광명4동 마을 주민들은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실무협의를 거쳐 26일 오후 2시 경주시 선도동사무소에서 광명4통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지하통로 지점으로부터 약 70m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했으며 신설 예정인 19m 교량화 구간은 지방도 904호 이설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지방도 904호선 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19m 교량화 구간의 이전 설치비용 전액을 경주시와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까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선을 즉시 폐선하고 경주시는 중앙선 폐선이 확정되는 대로 민원구간의 철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45년간 경주시내와 단절된 생활을 해 오던 광명4통 마을이 광명3통 마을이나 경주시내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마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고속도로 때문에 45년간 소외됐던 경주시 주민 통행불편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지난 45년간 경주시내와 단절돼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왔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광명4통 마을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광명4통 마을은 광명3통 마을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으나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양분되면서 폭 8m의 지하통로만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

하지만 광명3통은 도로개설로 경주시내로의 접근이 쉬워진 반면 광명4통은 지방도 904호선으로 지하통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를 횡단해야 해서 마을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를 시행하자 주민들은 마을 앞 경부고속도로 200m 구간을 교량화해 그 아래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에 통행하던 지하통로 대신 그 위치에 19m의 구간을 교량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를 거쳐 경주시 선도동사무소에서 광명4통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정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지하통로 지점으로부터 약 70m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했으며 신설 예정인 19m 교량화 구간은 지방도 904호 이설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지방도 904호선 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19m 교량화 구간의 이전 설치비용 전액을 경주시와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까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선을 즉시 폐선하고 경주시는 중앙선 폐선이 확정되는 대로 민원구간의 철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40. 민자고속도로 소음·분진 예방 요구

민원번호 : 2CA-1505-205218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경기 화성시 일원 아파트 주변에 민자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방음시설 등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에 대해 주변아파트에서 민원 아파트 교량 끝(600m)까지 이중 방음벽 설치하고, 높이는 9.5m로 시공하기로 조정.

*환경민원, 다수인민원(741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외 740명
- 피신청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 주변에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음분진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방음시설 등 설치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고속도로 개통 시 소음·분진 등 발생 여부
-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관련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고속도로 개통 시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분진으로 주거 생활 곤란하니 방음시설 등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민요구안(반방음터널 170m, 방음터널 430m) 반영시 방음 시설 설치와 교량 개축 공사 등으로 약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수용 곤란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5. 5. 19. 고충민원 접수 후 설명자료 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7회)
- 3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소음·분진 예방을 위해 터널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이중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로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중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주변아파트에서 민원아파트 교량 끝(600m)까지 이중 방음벽 설치하고, 높이는 9.5m로 시공(3m는 흡음형, 6.5m는 투명형)
- 교량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은 구조(안전도) 검토후 조정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고속도로 개통 시 차량 증가로 소음·분진 등 발생으로 주민들 피해 우려	• 이중방음벽 설치 등으로 주민피해 감소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이중 방음벽 설치로 소음·분진 등 예방에 기여

기념촬영하는 이성보 위원장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민자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분진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9.04.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국민권익위, 수원~광명고속도 소음민원 해결

【화성=뉴스시스】김기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쌍용예가아파트 주민 741명이 제기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소음 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담읍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업시행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주민이 요구한 현 방음벽 높이 6.5m에서 9.5m로 상향 설치하고 미관 등을 고려해 높이 3m까지는 흡음형, 나머지는 투명형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지난 2011년부터 수원시 호매실동과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27.4km 구간 민자고속도로를 내년 4월 개통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봉담IC~천천교 구간과 75m 떨어져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주민들이 올 초부터 소음피해를 막을 방음시설 설치를 주장해왔다.

kkw517@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화성시 매송고색로 주택가 차량 소음 차단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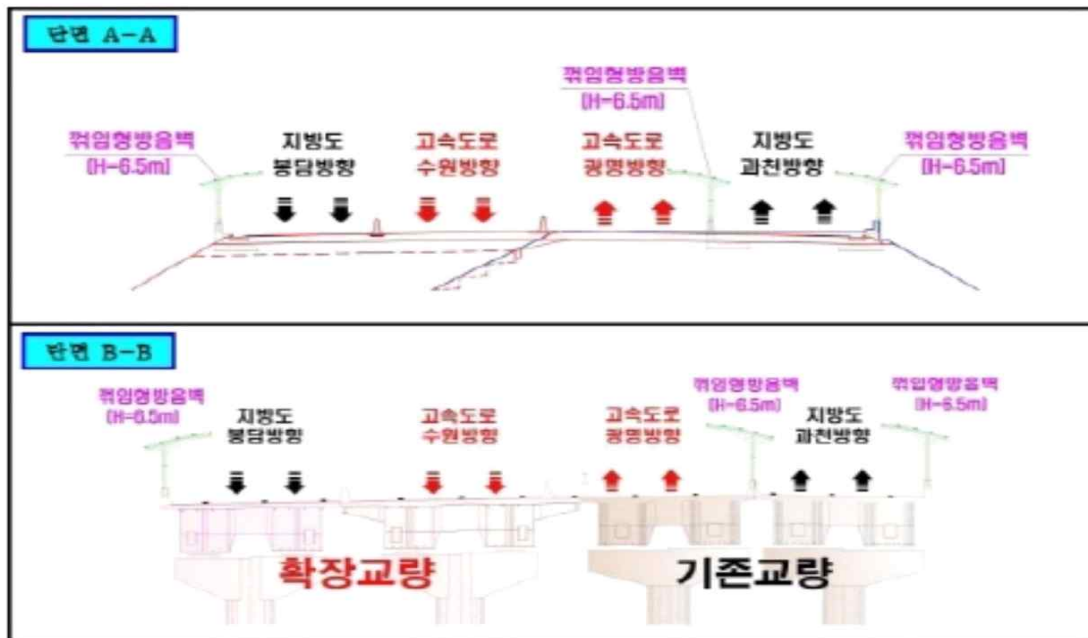
권익위, 이중 방음벽 설치, 높이 9.5m 상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정보, 이하 권익위)는 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차량소음 피해 개선을 요구하는 매송고색로 주민 74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횡단면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매송고색로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와 75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신창아파트는 방음벽 높이가 9.5m인 반면 쌍용예가 아파트는 6.5m로 설치되어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쌍용예가아파트 등 주민 741명은 방음벽 높이를 인근 아파트와 동일하게 높여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당초 설계한 6.5m 높이의 방음벽으로도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와 현장 조사를 거쳐 4일 오후 2시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는 신창아파트에서 쌍용예가아파트 구간까지 방음벽을 내·외측 2개로 설치하고 높이는 기존 6.5m에서 9.5m로 상향 조정하기

서해안방송
로 했다.

2015년 09월 04일 (금)
인천/경기

아울러 미관 등을 고려하여 높이 3m까지는 흡음형, 나머지는 투명형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과 분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41. 화성 국도 77호선 통로암거 설치 요구

민원번호 : 2AA-1505-132879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송산○○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왕복 6차선인 77국도와 왕복 2차선인 시도 4호선이 만나는 신외교차로가 국도의 경사구간 내에 위치하여 평면으로 시공될 경우 농기계 등의 운영이 많은 마을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으니 신외교차로를 입체로 건설하거나 농기계 등이 교차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시도 4호선에서 농기계 등이 신외교차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 1개소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과 농기계 등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안전민원, 다수인민원(221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신○○외 220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신외교차로를 입체로 건설하거나 농기계 등이 교차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통로박스 설치 필요성
-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통로박스 설치 가능성 및 적절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신외교차로가 국도의 경사구간 내에 위치하여 평면으로 시공될 경우 농기계 등의 운영이 많은 마을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으니 신외교차로를 입체로 건설하거나 농기계 등이 교차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설치 필요

- (수자원공사) 주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연약지반으로 성토 등이 필요한 입체교차로 설치는 곤란하며,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형상 배수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우기 시 상시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설치가 곤란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 도출
- 현장조사 : '14. 9. ~ '14. 11. 6회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시도 4호선에서 농기계 등이 신외교차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 1개소를 설치
- (화성시장) 시도 4호선에서 통로박스로 연결되는 부체도로는 화성시장이 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
- (신청인) 이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이 민원 사업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민원으로 국도 77호선 공사 지연 • 농기계가 교차로를 통행함에 따른 사고 위험	• 국도 77호선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2) 시사점

-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신청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
- 차질없는 국도 77호선 건설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경기 화성 국도 77호선 공사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



【서울=뉴스시스】 김인수(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회의실에서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 통로박스 설치 및 농경지 진출입로 도로 포장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13.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권익위, 화성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민원 해결

【화성=뉴스시스】 김기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회의로 경기 화성시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에 농경지 진출입로가 개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남양읍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에 농경지 진출입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신설되는 안산~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국도의 남양읍 구간과 시도도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합의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 통로(4.5m×4.5m)를 개설하고 농경지 진출입로 내 포장이 되지 않은 52개 구간을 포장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농경지 진출입로의 배수처리 등 유지 관리업무를 맡기로 했다.

앞서 농업에 종사하는 남양읍 신외리, 장전리, 문호리 주민들은 지난 9월 신설되는 국도 77호선이 기존 농지를 가로 지르도록 설계돼 향후 농기계가 교차로를 지나 다녀야 하는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진입출로 개설을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회는 이날 현장조사를 거쳐 수자원공사와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kkw517@newsis.com

권익위, 화성 국도77호선 공사 집단민원 현장조정

농기계 통로박스 설치 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외리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 설치와 관련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화성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에서 마을주민, 송산건설단장,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하나로 조성되는 신외교차로는 농경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농기계가 교차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사고를 우려한 교차로 주변 마을의 농민들이 농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박스 설치와 국도 주변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5월과 9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 합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의 52개 미포장 구간을 포장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공사가 설치하는 통로박스의 배수처리 등 유지·관리업무를 맡기로 했다.

화성/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42.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IC 조기 개통

민원번호 : 2AA-1510-057761 (교통도로민원과)

<조정개요>

2010년부터 경기동북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IC가 완공되었으나 개통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교통체증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개통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해 정부기관과 시행사 간 역할을 분담하여 조기에 개통이 되도록 조정·중재

*다수인민원(14,500여 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 등 14,500명
- 피신청인 : LH공사
- 관계기관 :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2) 민원주요내용

- 고속도로 IC가 제대로 개통되지 않아 차량 정체 등 불편이 있으니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고속도로IC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고속도로IC 개통이 지연되어 교통체증 등 불편하니 조기 개통 요구
- (LH공사) 접속부 교량과 국도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 아스콘 표층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IC 조기 개통 곤란
- (관계기관) LH공사에서 미완공된 교량 등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공사 등을 완료할 경우 준공검사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

2) 민원특성 : 다수인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5. 10. 15. 고충민원 접수 후 설명자료 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7회)
- 3차례 현장조사와 다수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IC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IC가 조기 개통 위해 표충공사 등 시행 시 행정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IC 접속부 교량과 연결구간에 아스콘 표충포장 2015.12.31.까지 완료
- IC 조기 개통을 위한 준공관련 절차 2016.1.31.까지 완료 및 개통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고속도로IC 개통 지연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 호소하며 14,500명의 다수인민원 발생	• IC 접속부 교량과 연결구간에 아스콘 표충포장 조기 완료 • IC 조기 개통을 위한 준공관련 절차 진행 시 적극 협조하기로 조정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사업시행사와 관계기간이 적극적인 협력에 협조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집단민원 현장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로 주변(국도47호선)과 연결된 갈매나들목 개통이 지연되면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LH공사 등은 2010년부터 경기 동북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갈매나들목 공사도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갈매나들목과 국도47호선의 접속구간 등에 표층포장 공사 등이 지연돼 개통이 연기 되자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10월 주민 1만 4500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표층포장은 국도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의 도로 높낮이 차이를 완화시키는 포장공사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현재 관할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과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조기 개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8일 LH공사 남양주사업단 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별내로 주민들과 LH공사 남양주사업단장, 구리시 부시장, 남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미완료된 접속부 구간 중 교량과 국도47호선의 연결구간 등에 대한 표층포장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갈매나들목을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검문소 사거리 주변의 인도와 옹벽 사이가 붕괴되어 사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남양주시의 협조를 얻어서 옹벽 보강 및 보도포장 공사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갈매나들목이 조기 개통될 경우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